

연구보고 2011-02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RESEARCH INSTITUTE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1-02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박 광 동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Standard Legislative Model for a
Voucher System and Plans for Rational Reform
- Focused on a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

연구자 : 박광동(부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11.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 여러 재정사업에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정책집행수단의 하나인 바우처(Vouchers)제도가 도입되거나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보장·사회복지·교육행정 등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바우처제도는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 보다는 시장경쟁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음.

□ 연구의 목적

-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바우처제도 개관

○ 특 성

- 바우처는 형태의 다양성, 공적-사적 계약 관계의 혼합성, 수급자의 선택권, 사용용도의 제한성, 양도의 제한성 등의 특성이 있음

○ 법적 성격

- 바우처신청권은 종전까지의 국가의 시혜적 조치제도라는 인식에서 국민권리의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 효 과

- 직접적인 효과는 수급자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종류의 선택에 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주요 외국의 바우처제도

○ 정책분야

- 교육·훈련, 보육, 가사, 고령자간병, 주택 등이 중심
- 약자에의 배려나 신규참여의 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의 정책입안 및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선택의 자유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킨 사례가 있음

○ 입법례

- 대부분의 국가는 바우처 제도만을 위한 개별 법률 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 현 황

-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된 법률관계 관련 당사자는 크게 정부(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자체, 제공기관,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체계

- 2012년 2월 5일 전까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기본적인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그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될 것임

□ 기본법 제정 검토

○ 내 용

- 바우처 관련 기본법은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법 제1장 총칙장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들의 기본책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
- 기본법 제2장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시책 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국민의 의사 반영 등,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배려,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정비 등에 대한 규정

□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 법령제명의 명확성 및 간결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적 이해성 제고 및 법체계상 사회서비스이용권 안에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섭할 수 있는 간결한 법령 제명이 필요

○ 사회서비스 범위와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

- 사회서비스 범위에 대해 시행령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한정하는 규정보다는 ‘정부’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

○ 중복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공자 등록정보 고지)과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는 중복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 범위 보다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임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입 및 검사 절차의 명확성
 -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권리의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절차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록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법제의 기반자료

- 내 용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자료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 내 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에 대한 법체계 및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안 및 개선방안 제시

▶ 주제어 : 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복지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Recently, a voucher system, on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tools that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in developed countries, is being introduced to or expanding in various financial programs in Korea.
- Based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is currently in force in a wide field of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 A voucher system has many point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n that the system provides certain public servi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competition rather than publicness.

Purpose of this study

- To learn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and Korea's proposed legislations related to a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as well as the current operating status of each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as well as its proposed subordinate statutes and to draw a standard legislative model and plans for rational improvement.

II. Main Contents

An Overview of a Voucher System

- Characteristics

- The characteristics of vouchers include diversity of form, a mix of public and private contracts, options for the beneficiaries, and limitation on the uses and transfer.

- Legal Nature

- A right to apply for a voucher is beginning to be considered as the people's rights, changing from a traditional perception that it is a benefit system of a country.

- Effects

- A direct effect is that beneficiaries can receive services that suit them by choosing an appropriate social service voucher.

Voucher Systems in Major Foreign Countries

- Policies

- Focused on education · training, childcare, housework, aged care, and housing.

- There are cases that drafting and designing a policy to care for the weak or to promote new participation have actually limited freedom of choice and expanded government expenditure.

- Legislative Examples

- Most countries, rather than having a separate law for a voucher system, have related provisions under a law as subordinate statutes.

- Current Status and Legal System in Korea

- Current Status

- Major legal parties that have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social service vouchers can be classified into the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tc.), local governments, providing organizations, and recipients.

- Legal System

- The basic applicable Act for the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is 「Social Welfare Services Act」 until February 5, 2012; after that it will b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 Review on the Enactment of a Framework Act

- Content

- A Framework Act on voucher should provide an ideology and principles regarding the system and the policy.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stipulates the purpose, definitions, basic ideas, duties of social services providers, necessary measures.
- Chapter 2. Basic Measures of the Social Service Policy of the Framework Act provides clauses for the implementation that stipulate role sharing and responsibilities when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reflection of the people's opinion,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environment of public service workers.

Plans to Improve Current Laws

○ Clearness and Conciseness of the Title of the Law

- A concise title of the law is required so that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can promote people's understanding and include matters regarding the use of social service within the social service vouchers.

○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the Social Services and Plans for Provision, and Main Body of Enforcement

-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social services,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further stipulate the types of social services other than social welfare service and health and medical care that will be the target of this Law.
- The main body of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social services provision pla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should rather be the “government.”

○ Overlapping Provisions

- Two overlapping clauses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Article 16(4) (Notification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Article 29(Release of the Information on Service Providers)--should be amended.

○ Provisions on Relation with Other Acts

- Article 3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stipulates relation with other Acts, rather than the scope of application.

○ Plans for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 More detailed stipulation is needed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ervice users and to include every plan to provide secure and high-quality services.

○ Clear Procedures for Access and Inspection

- Mor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is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legal stabilit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 Social Service Voucher Issuance Process, etc.

- There should be clear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s to issue a social service voucher and to raise an objection, as well as on the registration and things that social service providers should make public.

III. Expected Effect

Basic Data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Service Voucher

○ Content

- This study provides the data to review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and Korea's proposed legislations related to a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as well as the current operating status of each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 Content

- This study provides a legislative proposal and plan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the content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as well as its proposed subordinate statutes.

▶▶ Key Words : Voucher, Social Service, Public Service, Social Welfare Service, Welfar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22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25
제 1 절 바우처의 개관	25
1. 형태의 다양성	25
2. 기본특성	26
3. 법적 성격	27
4. 효 과	29
5. 다른 보조수단과의 비교	31
6. 바우처의 설계	32
제 2 절 주요 외국의 바우처제도	38
1. 호 주	38
2. 일 본	60
3. 영 국	73
4. 미 국	81
5. 독 일	92
6. 시사점	96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99
제 1 절 도입배경 및 현황	99
1. 도입배경	99
2. 현 황	99
제 2 절 현행 법체계	105
1. 현 황	105
2. 타법과의 관계	109
제 3 절 종전 입법안 분석	110
1.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	110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7
3. 「사회서비스법」(안)	124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	129
제 4 장 입법모델	135
제 1 절 입법모델의 방향성	135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35
2. 기본법에 관한 주요내용	136
3.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140
제 2 절 종전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47
1. 제1안 : 2개 법률로 입법화하는 방안(「사회서비스이용 관리법안」+「사회복지 사업법」)	147
2. 제2안 : 2개 법률로 입법화하는 방안(「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150
3. 제3안 : 2개 법률로 분법화하는 방안(「사회서비스법률」(안)+ 「사회복지 사업법」)	152

4. 검토	153
제 5 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155
제 1 절 주요 내용	155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55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157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159
제 2 절 관계 법령 법체계 검토	161
1. 법령제명의 명확성 및 간결성	161
2. 약칭사용	162
3. 사회서비스 범위와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	163
4. 벌칙규정	167
5. 중복규정	170
6.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172
7.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174
8. 용어의 정확성	176
9. 출입 및 검사 절차의 명확성	178
10. 이용자의 비용 부담	180
11.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절차 등	181
제 3 절 알기 쉬운 법령 체계 검토	194
1. 정비기준	194
2. 검토안	195
참 고 문 헌	201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11
- [참고자료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1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증빙을 의미하고, 쿠폰(票)과 동일하게 재화·서비스와의 교환권을 가리키는 바우처(voucher)제도는 ①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선택권 부여, ② 재정지원방식이 공급자에게서 지원되는 것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전환, ③ 서비스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④ 바우처는 선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그 선택권 범위를 조정·통제할 수 있고, ⑤ 바우처 수요자와 바우처 공급자 모두에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⑥ 바우처시스템의 운영은 기존 사회서비스 지원방식인 공급기관의 지원방식보다 수요자 지원방식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진다.¹⁾²⁾

-
- 1) 박정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리뷰 제12집,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12, 9-10면; 정광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행정논총 제4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3, 63-64면.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붙여진 보조금 즉 수요측 보조금이다[남찬섭,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상황과 복지 제26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8, 11면].
 - 2) 바우처 형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종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둘째, 서비스 질 향상 보다는 수요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 위주의 지나친 경쟁이 초래되어 왜곡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 서비스 공급자를 대량 유발할 우려도 있다. 셋째, 바우처의 전매(black market),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의 우려가 있다. 넷째, 시장에 충분한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프로그램의 도입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additional demand)로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바우처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은 있으나 바우처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최성은/최석준, 바우처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44-45면]. 여섯째, 시스템이 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 보기보다는 수익을 위한 잠재적 자원으로 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31집, 서울대

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전통적인 중앙 집중 체계가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서 제기되어 왔다.³⁾ 그런데 이러한 바우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① 바우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② 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바우처제도를 총괄·감독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있다.⁴⁾

우리나라의 바우처제도는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당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법 제33조 7의 2항),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⁵⁾ 그리고 최근 사회서비스 공급 방안 가운데 바우처제도가 도입되거나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⁶⁾ 즉,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보장·사회복지·교육행정 등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12., 323면]. 일곱째, 바우처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고,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바우처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김중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복지동향 통권101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7.3, 27면].

- 3) 양난주,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Vol. 61, No. 3, 2009.8, 81면.
- 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9, 21-22면.
- 5) 김인숙, “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11, 33-34면.
- 6)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해준 대표적인 방식들로 세금수당이나 간호수당을 포함하는 현금수당(cash allowance), 서비스 이용자의 독립계좌로 특정 사회서비스 비용을 직접 입금하는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 scheme)나 사회서비스 관련 모든 지원들의 총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개인총예산제도(individual budget),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 등이 포함된다[김은정,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과 정책적 쟁점”, 사회과학연구 제25집 1호,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9.3, 121-122면].

전달과정 변화⁷⁾와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⁸⁾에 기인 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비시장성, 집단적 소비 결정, 필요 자원 조달 및 사회복지서비스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보다는 규모가 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⁹⁾ 이러한 사회서비스에서의 바우처제도에 대한 시행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바우처는 주로 ① 효율성¹⁰⁾과 형평성의 동시 달성, ② 정부의 특정 분야의 산업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③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제공, ④ 기존 공급자 방식에 수반된 비효율성 감축, ⑤ 정부예산 절감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다.¹¹⁾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한정된 일단의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구매권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보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 경쟁성과 소비 측면에서의 선택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¹²⁾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7) 종래 정부는 공공서비스 결정과정 및 전달과정을 모두 직접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수단 활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전달기제가 활성화되어 정부는 결정하고 서비스 생산은 민간 및 비영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엄태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효율성 분석, ppt자료].

8) 복지서비스는 정부 독점 방식 혹은 공급자 중심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전달은 투명성, 국민의 서비스 효능감(policy efficacy),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 정부 신뢰를 향상시킨다[엄태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효율성 분석, ppt자료].

9) 최옥채, “바우처사업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상황과 복지 제25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2, 41면.

10) 바우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 생산적 효율성, 행정적 효율성 등이다[엄태호/조근식/김공록,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6, 71면].

11) 정광호, 바우처 연구, 법문사, 2008, 11-13면; 박정호, 전개논문, 11-12면.

12) 이창근/손민수/김의준, “바우처제도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3, 174면.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입법 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대한 법제적인 분석에 대한 범위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¹³⁾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서비스는 교육, 국방, 의료, 주택, 사회복지 등과 같이 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호).¹⁴⁾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 범위에 따라 광의의 개념은 공공행정부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협의의 개념은 사회적 보호, 장애, 질병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¹⁵⁾

13)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제도도입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 학술대회, 2007.6, 290면].

14) 김인,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4호, 2010.2, 3면.

15)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바우처사업의 발전방안”, 한국거버넌스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4.3, 41-42면. 다만, 2011. 2. 11. 발의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 제4조 4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1.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삼는 용도제한이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와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2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바우처제도의 운영 및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바우처제도의 현황 및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관련 입법안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위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법모델 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7.15 발의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협의적 개념을 돌봄, 정보의 제공,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협의적 개념을 사회서비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① 보육 서비스, ②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⑥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⑦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제 1 절 바우처의 개관¹⁶⁾

1. 형태의 다양성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증표를 의미하며, 쿠폰(券)과 같은 재화·서비스와의 교환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제한이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 미리 보조금의 상한(cap)이 설정되어진 경우를 좁은 의미의 바우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바우처 도입이 가장 많이 검토되어 온 것은 교육 분야이며, 그 논의는 19세기 중반의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한 제안이 계기가 되었고¹⁷⁾, 그 이후에 바우처는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간주되었다.

그런데, 바우처는 그 기본형이라고도 해야 할 쿠폰이 교부된 사람은 재화·서비스와 교환하게 되고, 공급자는 그 쿠폰을 정부에 제출하여 환급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효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우처가 반드시 쿠폰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선, 자기 기록식 또는 IC카드식이라도 무관하다. 또한 대상자에게 사전에 물리적인 증표가 교부되지 않고, 서비스 등의 계약·구입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 서비스 등의 공급자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공급실적에 연결된 보조금액을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의사(擬似)바우처」)도 많이

16) 内閣府政策統括官(經濟財政-景氣判断·政策分析担当), バウチャーについて-その概念と諸外国の経験, 内閣府政策統括官, 2001 참고.

17) Milton Friedman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교육을 위해 제한된 바우처를 개괄하였다[Ronald J. Daniels, Michael J. Trebilcock 공저/장승옥, 지은구, 김은정 공역, 복지국가와 바우처, 학지사, 2009, 36면].

채용되고 있다. 다만, 의사바우처 방식의 경우는 대상자에게로의 공급 실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결이 없는 보조제도는 바우처가 아니고 「기관 보조」이다. 또한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보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우대 또한 광의의 바우처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¹⁸⁾ 다만, 빈곤층 내지 저액 납세자가 받는 혜택은 0 또는 적다는 강한 제약이 있고, 정책 논의에서도 주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바우처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본특성

바우처는 보조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¹⁹⁾ 첫째, 바우처제도 이용 시 계약법적 관계가 공적·사적 계약 관계의 혼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⁰⁾

18) Steuerle, C. E., Ooms, V.D., Peterson, G., Reischamer, R. D.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pp2-3.

19) 바우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른 정책도와 비교해 보면, 첫째 최소한의 직접성(directness), 높은 자동성(automaticity), 약간의 강제성(coerciveness), 높은 가시성(visibility)을 가지고 있다[김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제도의 시장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2010.6, 400면]. 또한 바우처는 직·간접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구매력을 제공하고, 바우처의 구매력과 구매범위의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며,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박정호, 전개논문, 14면;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3, 63-64면]. 그리고 바우처를 다른 정책수단과 의미 있게 구분해주는 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의 특징에 있다. 그것은 첫째, 개인과 가구의 특징에 기반하여 소비자에게 주는 교부금(grants)이라는 점, 둘째 제한된 선택(intermediate choice), 셋째 공급자 경쟁, 넷째 한계상환율의 감소(declining marginal rate of reimbursement)라는 네 가지라고 설명한다[양난주, 전개논문, 81면].

20) 김성욱,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전달방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2011.8.8, 11면 참조.

둘째, 교부된 개인(수급자)에 의한 선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선택권). 예컨대 교육바우처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식료품 바우처의 경우에는 어느 식료품과 교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지급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셋째, 선택권이 부여되는 바우처제도도 지정된 범위의 재화·서비스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용도제한). 또한 교육이나 식료품 등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적절하다라고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약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²¹⁾

넷째,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양도 제한). 이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인에게 한해 일정 수준의 재화·서비스의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예가 빈곤층이지만, 초·중·고등 교육의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층 모두라고 하는 선택사항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제한이 없으면, 수급자는 바우처를 매각해 현금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3. 법적 성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성질이 국가의 조치제도인지 법적 권리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명시적으로는 없으나, 최근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권리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권리로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일본에서 도입된 「지역 진흥권」은 바우처라고는 하지 못하고 현금 급부의 대체적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의 장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면서 국가의 시혜적 조치제도라는 틀 안에 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²²⁾

그러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 또는 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채, 절차에 해당하는 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²³⁾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여전히 국가의 시혜적 조치제도의 범위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간접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판결이 최근에 제시되었다. 즉,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년 1월 28일 선고 2010구합28434에 따르면 첫째, 사회보장급부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통상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간도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보장급부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내린 사회복지서비스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행정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실질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절차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보장행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엄격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의 제공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한 번 사회

22) 임성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경과와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 5개 기관 공동개최 대토론회, 2011.2.22, 13면.

2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권리이긴 하나 실제적 권리라기보다는 수속적인 권리이며, 실제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윤찬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의와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 5개 기관 공동개최 대토론회, 2011.2.22, 43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구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의 영역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논의를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제8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제27조-제31조) 등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의 부여 및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효 과

바우처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어떠한 보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수급자가 선택을 실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재화·서비스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24)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 둘째, 바우처 사업방식의 지원은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재검토(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바우처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바우처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넷째, 바우처 지원에 있어서 본인부담금 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 다섯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등이 있다[김윤수, “전자바우처제도 및 운용사업의 현황”, 제1차 여성인재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5.26, 7면].

이러한 효과가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는 의의뿐만 아니라 공급자 사이에서의 경쟁을 촉발하여, 제품·서비스의 품질의 향상이나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과 「경쟁」의 실현이야말로 바우처의 기본적인 도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⁵⁾

그 밖에 바우처의 부차적인 효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재정 지출의 삭감」이다. 보조금 없이는 특정 재화·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빈곤층 등의 특정 계층의 사람만을 교부 대상으로 하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보다 재정 지출이 적게 된다. 또한, 경쟁에 의해 공급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비용이 삭감되면, 동일한 정도의 질에서의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절감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재정 지출이 삭감될지는 바우처의 총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계 된다. 총액에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 교부하면, 효율 개선 효과를 벗어나 지출이 확대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우처 교부시의 사무경비에 대한 주의도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의 창출」의 효과이다. 유럽에서는 가사나 보육 등의 개인서비스 분야에 바우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바우처의 형태로 수요자에게 보조를 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에의 보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직접보조를 실시해도 고용창출로 연결되므로, 역시 바우처 고유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다.

셋째, 소비자 중심적이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부와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업무나 절차가 간소화되는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다.²⁶⁾

25) 홍금자, “보육지원시스템의 바우처제도 도입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9.6, 200면.

26) 정광호, 전개서(바우처 연구), 33-35면.

5. 다른 보조수단과의 비교

공급자에 대한 보조나 현금의 보조 등 다른 보조 방식과 비교하기 전에 정부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바우처 보다는 다른 보조수단이 우수한 경우도 있다.

바우처 도입으로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특정의 재화·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외부성」이 있는 경우이다. 즉 수요자의 자유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은 소비 밖에 행해지지 않을 때에 그 소비에는 외부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교육(특히 초등·중등 교육이나 IT 교육)은 수요자의 만족감이나 장래 투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편익 외에, 개인의 지식이 충만하여 사회전체의 지적 자본을 충실화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 제한이 없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바우처 이외에 의미가 있는 수단으로서는, 민간공급자에게로의 보조(기관 보조),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은 그것이 민간에게 가능한 분야이면 경쟁체제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 고용보다는 민간고용의 촉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과 민간기관에의 보조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공립과 사립의 경쟁 조건이 어느 정도 동등한가가 중요해진다.

민간 기관에의 보조는 수요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보다 우수하다. 다만, 수요가 강한 기관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구조가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경쟁으로 연결될 가능성

은 미비하다. 또한 기관 보조의 소득제한 등 수요자의 속성에 대응한 보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한편, 주된 정책목적이 소득재분배인 경우에는 용도 제한이 있는 보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빈곤자라고 해도 식료품 및 교육 등에 대한 용도범위를 정부가 개별 빈곤 가계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표 1>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²⁷⁾

	현물보조	소득보조	바우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보장	보장
소비형태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능	불가능	가능
공급자의 경쟁	제한	-	유발

6. 바우처의 설계

바우처제도의 설계에 앞서 효과적인 바우처제도를 위해서는 ① 다수의 공급자, 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정보의 습득, ③ 가격의 적절성 등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²⁸⁾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27) 보건복지가족부,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성과와 과제, 2009.12, ppt자료.

28) 박정호, 전개논문, 12-13면; 신창환/강상경, “한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공급구조와 바우처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2010.5, 404-406면. 이에 더하여 바우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바우처 도입을 위한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공급자 사이의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 보장, 충분한 자원 확보 및 전달기구 설치와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드는 경우도 있다 [박광수,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도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54면; 최성은/

바우처를 설계하게 되는데 바우처의 설계에는 상당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²⁹⁾ 따라서 대상 분야의 상황에 알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³⁰⁾

(1) 교부 대상 및 금액

바우처의 교부대상 및 교부 금액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우처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 바우처는 현금과 같고, 바우처 수급에 의해 얻은 여유자금은 다른 재화·서비스의 구입에 충당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우처의 목적인 재화·서비스에의 수급자의 선호가 강하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바우처의 금액이 적을 때에는 바우처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현금 등가).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바우처를 교부하면은 결국은 동일인으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교부하는 것이 된다. 이 때, 과세에 의한 취업·소비행동의 왜곡현상과 바우처 교부비라고 하는 2중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한 바우처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정책효과 0이라는 3중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최석준, 전게서, 45-48면].

29) 바우처제도는 그 지급형태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및 환급형 바우처로, 서비스 거래 후에 지원금을 환급 받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형 바우처로, 수혜 대상에 따라 선별적 바우처와 보편적 바우처로, 바우처 지급액이 균등한지 아니면 수혜자 조건이나 공급자 가격에 따라 차등화 되는지에 따라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로 구분된다[최성은/최석준, 전게서, 38면].

30) 바우처 설계와 관련하여 ① 보편적 프로그램인가 혹은 자산조사프로그램인가, ② 바우처가 지원되는 소비자를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제공자 자격을 결정하는 것, ③ 바우처 수급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④ 초과청구의 허용, ⑤ 이용자 선별의 허용, ⑥ 정보 실패, ⑦ 바우처에 대한 공급 측면 시장대응의 부적절성에 관한 숙고와 특정 상황에서 바우처가 새로운 독점이나 기존의 독점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Ronald J. Daniels, Michael J. Trebilcock 공저/장승옥, 지은구, 김은정 공역, 전게서, 62면].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교부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2) 무차별 지원의 비판과의 관계

(1)의 논점은 바우처에 대한 퍼주기 행정의 비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무차별 지원」의 비판은 바우처를 교부하지 않아도 그 재화·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했을 것이고, 원래 바우처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바우처의 설계의 문제이며, 소득 그 외의 속성에 의해 교부대상을 적확하게 구상하면 「무차별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관보조가 본래적으로 「무차별 지원」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관보조가 개인의 상황에 대응한 선별이 가능하지만 실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유복한 가정의 학생이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관보조는 공급자 사이의 경쟁이 약해져서, 결국은 고비용에 의한 부담증가라고 하는 수취인이 없는 최악의 「무차별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3) 금 액

전통적인 바우처는 정액제이며, 일정한 구입 금액까지는 100%, 그 이상은 0%라고 하는 특이한 보조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조율 구조가 정당화 되는 것은 그 재화·서비스의 소비가 일정 수준까지는 사회적으로 외부성이 있으나, 그 수준을 넘으면 순수한 사적 재산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외부성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저하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할인권과 같이, 바우처와 함께 현금 지원이 필요로 되는 경우에는 정률 보조율제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구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율을 체감시키는 일도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금액구조의 바우처는 쿠폰과 같은 형태에서는 취급이 어려웠지만, IT 화의 진전에 수반해 전자바우처카드에 구입정보를 기록시키면서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4) 의사(擬似)바우처

개인에게 쿠폰 또는 카드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는 공급자 경유의 의사바우처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 바우처의 장점으로는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교부 대상자보다 수가 적고 세무 및 사무능력도 높기 때문에, 교부에 수반하는 사무비를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1명의 대상자가 복수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계액의 상한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또, 쿠폰 등의 물리적 존재가 없으면 권리의식이 저하된다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의사 바우처제도는 1명의 대상자가 1개의 공급자와의 계약이거나, 공급자가 건설한 조직으로 비교적 소수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성이 있을 것이다. 초등·중등교육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반대로, 식료품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쿠폰 또는 카드의 교부가 필수가 된다.

(5) 용도 제한과 모니터링

바우처의 성질상, 어느 정도의 용도 제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용도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실시하면 수급자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예를 들면, 교육 바우처의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어디까지 정부가 규제하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책목적의 실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인 교원의 배제 등의 최저한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최저한의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는 정부에 의한 모니터링에 의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다만, 바우처 도입에 의해 공급자 사이의 경쟁이 강해지기 때문에 최저한의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행해지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도한 모니터링은 추가적인 재정비용을 발생시켜, 바우처 도입의 장점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6) 정보개시

바우처에 대한 비판으로서 수요자 사이에서의 정보격차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정보량이 많은 고소득자나 고학력자가 가장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저소득자나 저학력자는 불리한 선택에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빈부의 격차가 심한 미국에서 교육바우처를 둘러싼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기업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 바우처의 대상이 되는 공급자 측의 정보개시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 의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개별의 공급자에 대해 공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³¹⁾

(7) 수급의 매칭

바우처가 교부되면 바우처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재화·서비스에의 수요가 확대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이 정도는 공급의 가격

31) 정보실패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 다른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가 사전정보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신용성 있는 사후 결합 메커니즘을 개발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는 것이다. ② 시민이 그들의 바우처를 이성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③ 위의 2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 해도 정부는 재단된 소비자보호 요구들을 통해 또는 시민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명백한 프로그램 측정과 감독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Ronald J. Daniels, Michael J. Trebilcock 공저/장승옥, 지은구, 김은정 공역, 전개서, 68면].

탄력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참가규제는 철폐하고 공급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우처 교부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학교나 주택과 같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반응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재화·서비스에서는 일시적으로 극단적인 수급 압박이 되는 경우의 대응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의 인기가 있는 공급자에게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소득분배상의 관점에서 가격이 규제되든가, 혹은 사회적 비판을 우려하여 공급자가 자주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생각된다. 필연적으로 수급의 균형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할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서의 추첨, 선착순, 수요자의 상황에 의한 선별³²⁾ 등이 있을 수 있다.

(8) 혼합 부분에서의 동등 조건

바우처가 도입되는 분야에는 공적 공급자와 민간 공급자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적 공급자를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므로, 민간과의 경쟁 조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우처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 조건은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즉, 공적 공급자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종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바우처를 교부하면 된다. 그 일정액이란, 공적 공급자와 민간 공급자에게 직접 유통되는 소비자 1인당 공적 자금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바우처를 넓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방대한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적 공급자에게로의 기관보조를 삭감하는 것이 필수가 된다. 공적 공급자에 의한 기관보조에서 바우처로 대체가 진

32) 저소득자에 대한 우선적 할당 등.

행되면, 공적으로 경영되는 필연성도 부족해져서 공설 민영이나 완전한 민영화에의 이익도 발생한다.

제 2 절 주요 외국의 바우처제도

1. 호 주

(1) 개념 및 유형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바우처로 이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³³⁾ 이용자 본인이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크게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 그리고 환급형 바우처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의 신청에 의해 쿠폰이 지급되고, 사업담당부서가 바우처를 수혜자 관련부서를 통해 지급하고 제공업체 관련부서를 통해 환류를 받는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에 따라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가 있다.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에는 쿠폰의 지급 없이 사업자에게 수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수요자의 선택이 완만히 이루어지면 명시적 바우처와 효과가 동일하고,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역시 명시적 바우처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³⁴⁾

33) 김윤수, 전계논문(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제도도입 사례연구), 292면.

34)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제13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5, 29-32면.

(2) 특성 및 기본전제

바우처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혹은 가구 특성에 근거해서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바람직한 범주 내에서 범위 수준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셋째, 사업자간 경쟁을 한다. 넷째, 한계보상률 체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조금이 무한정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바우처가 아니다.

이러한 바우처 사업은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소외계층에 한 할지와 같은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정도, 서비스 요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바우처제도의 활용은 어떤 인종, 소득 등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모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우처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우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우처제도를 감독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3) 연 혁

1997년 7월 이전에 호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부서는 고용서비스청(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과 사회안전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였다. 호주 연방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7년 7월 1일 통과된 「연방서비스전달기관법」(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공공복지지원관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기존의 고용서비스청과 사회안전부의 일부 부서를 흡수하여 설립하였다.

하지만 센터링크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개혁을 주도하고 산하 부처간 조정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역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04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 DHS)를 신설하였고, 내각의 새로운 부서로 격상되었다. 보건부의 임무는 사회보건관련서비스를 호주 국민들에게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있으며 보건부 산하에는 종합부서(Core Department)와 기존의 부서와 다른 기관 부처에서 흡수한 총 6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센터링크, 국민건강보험(Medicare Australia), 아동기관(the Child Support Agency), 재활지원기관(CRS Australia), 청각서비스(Australian Hearing), 건강지원단체(HSA[health services australia] Group))이 있다.

각 기관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종합부서는 보건부 산하 각 기관들을 지도, 통합, 조정하고 정부 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정책·규정 등을 수립한다.

아동기관은 친부모와 헤어져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부모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재활지원기관은 장애인, 부상자 등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들의 작업장 안전을 지도·관리하며, 센터링크는 다양한 종류의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과 서비스를 은퇴자, 가족, 부모, 장애인, 구직자, 학생, 도움이 필요한 토착 원주민 등에게 제공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각종 건강관련 정부 프로그램 혜택³⁵⁾을 정부가 공인한 관련 업자들과 수혜자들에게 제공하고, 청각서비스는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수혜 자격이 있는 어른, 은퇴연금생활 의존자, 재향군인 등에게 청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지원단체는 수혜자들에게 직업병, 직장 안전, 건강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³⁶⁾

35) Medicare,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Family Assistance Offices, 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 Australian Childhood Immunization Register, Aged Care Payment etc.

36) 배종득 외3인, 전자바우처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67-68면.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한 개의 카드로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의 단일화 작업을 주도 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로 단일카드를 도입하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2006년에 존 하워드 수상이 액세스 카드의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 또한 과거에 실패한 호주 카드(Australia Card)의 부활 시도로 비추어 졌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반대와 2007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폐지 선언으로 인하여 실시 자체가 포기되었다.³⁷⁾

(4) 기본원리

바우처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방식으로 수혜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바우처 운용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바우처제도는 수용자와 시장을 지향하여 소비자선택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생산과 자원배분이 조절된다.³⁸⁾

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의 이용대상자에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서비스구매권을 부여하고, 사회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을 한 사회서비스 제공업체에게만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한편, 현금급여에 비하여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하여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자간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37) [http://en.wikipedia.org/wiki/Health_and_social_services_access_card_\(Australia\)](http://en.wikipedia.org/wiki/Health_and_social_services_access_card_(Australia))

38) http://www.cultureline.kr/webgear/board_pds/6879/D001446.PDF

(5) 현 황

호주에서는 현재 약 17개 할인카드(concession card)를 사용하여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1) 센터링크

센터링크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이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1997년 7월 1일 「연방서비스전달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을 찾아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센터링크는 다른 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대신 제공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센터링크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예산을 배정받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다른 정부기관의 정부혜택 대민 지출 서비스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6백50만 명의 호주국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⁹⁾

2) 직업기술바우처 프로그램(Australian Skills Voucher Program)

직업기술바우처 프로그램은 일정 자격이 없는 호주국민의 기본적 기술 증진을 위한 것으로 매년 호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30,000여 가지의 직업기술바우처가 제공된다. 직업기술바우처프로그램에 대한 법령은 남부 호주법령인 「훈련기술개발법」(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3)이 있으며 2008년에 개정되었다. 그 외에 연방법호주에서는

39)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ayments/index.htm>; 배종득 외3인, 전
게서, 69-70면.

2007년부터 25세 이상의 근로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기술바우처(Work Skills Vouchers)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500 한도의 비즈니스기술바우처(Business Skills Vouchers)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바우처는 1인당 최고 \$3,000까지 지원하되, 최대 3만 명까지 바우처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교육청(DES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이 훈련실시기관을 승인하고 바우처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훈련성과 관리·분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교육고용노사관계부의 신설로 이와 관련한 업무는 모두 교육고용노사관계부가 담당하고 있다.⁴⁰⁾

3) 심리상담바우처 프로그램(Victorian Bushfire Psychological Counselling Voucher Program)

산불 심리상담바우처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주정부의 기금 3백50만 달러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빅토리아 산불 재건 및 복구 기관 및 빅토리아 인적 서비스부의 공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혜택제도의 일부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공급자를 사용한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2009년 빅토리아 산불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개인에게 심리 상담을 위한 상품권을 6개 제공하며, 각각의 쿠폰은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1시간의 심리 상담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 상담의 각 세션에 대해 1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속되었다.⁴¹⁾

40) <http://www.deewr.gov.au/Skills/Pages/default.aspx>

41) http://www.psychology.org.au/medicare/bushfire_program/

4) 레크리에이션 바우처제도

호주 바윈(Barwon)시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 동안 레크리에이션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570,000달러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대상 업체는 바윈시 내외의 비상업적 휴양스포츠 기관 운영업체였다.

바우처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행된 해에 한정되고, 정부가 바우처를 시민들에게 발행하고 시민들이 이를 가지고 자유로이 휴양단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휴양단체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5) 교육바우처제도

1987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교육 시장에 대한 바우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 교육 기여 계획(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을 시행하였다.

고등교육 기여계획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용자제도로써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무이자 상환액을 조세의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지원법」(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⁴²⁾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처럼 교육바우처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빅토리아 정부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2011년에 300달러의 교육개시지원금(SSB: School Start Bonus)을 제공하였다.⁴³⁾

42) <http://www.deewr.gov.au/HigherEducation/Pages/Overview.aspx>

43)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school/lifeatschool/schoolstartfaq.htm>

6) 정부 청각 서비스 프로그램(The Australian Government Hearing Services Program)

호주 정부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1세 이상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중에서 연금수령자 할인 카드를 소지한 자, 센터링크에서 질병 수당을 받는 자, 골드보건귀환카드 소지자, 화이트보건귀환카드 소지자, 호주 국방부대의 일원과 이들의 부양가족, 어린이와 21세 미만의 청소년, 50세 이상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주민 등 특수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기관에 보내기 전에 담당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상자임이 인정되면은 무료 청력 테스트, 무료 청력 재활, 무료 디지털 보청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⁴⁴⁾ 이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호주청각지원개혁법」(Australian Hearing Services Reform Bill 1998)이 있다.

(6) 입법례

호주의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한 입법례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입법례로서 「복지법」(Human Service (Enhanced Service Delivery) Bill 2007)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복지법」(Human Service (Enhanced Service Delivery) Bill 2007)

동법은 등록기관과 액세스 카드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다룬 법률로서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진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정의, 목적, 대상, 적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액세스 카드를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 등록

44) <http://www.health.gov.au/hear>

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액세스 카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시민령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하의 호주 시민이 액세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액세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개인은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만18세 이상이거나 또는 유효한 액세스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액세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액세스 카드의 외면에는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 사진, 서명, 생년월일, 참전용사인지 여부, 연금이 지원되는 시각장애인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그리고 액세스 카드의 칩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서명, 카드고유번호, 유효기간, PIN번호, 복지카드, 의료보장번호, 긴급직불번호, 등록여부, 참전용사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다.⁴⁵⁾

2) 「훈련기술개발법」(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3)

「훈련기술개발법」은 제1장 서문, 제2장 관리, 제3장 고등교육, 직업교육과 해외학생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제4장 훈련제도/훈련생 근무기간, 제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 및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주(州)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도모를 위한 것이다.

동법에 따르면 12학년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혹은 레벨 II를 증명할 수 없거나 높은 자격증을 가지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미숙련 근로자를 포함한 구직활동자 및 구직활동 예정자가 있다. 필요서류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이 있으며 등록된 훈련기관에서 승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호주 교육·고용·노사관계부의 웹사이트⁴⁶⁾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⁷⁾

45) [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orderBy=date-eFirst;page=1;query=Human%20Service%20\(Enhanced%20Service%20Delivery\)%20Bill%202007%20SearchCategory_Phase%3A%22bills%20and%20legislation%22;rec=1;resCount=Default](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orderBy=date-eFirst;page=1;query=Human%20Service%20(Enhanced%20Service%20Delivery)%20Bill%202007%20SearchCategory_Phase%3A%22bills%20and%20legislation%22;rec=1;resCount=Default)

46) 교육·고용·노사관계부가 신설되면서, 2008년 12월 6일부터 본 사이트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정보는 <http://www.dest.gov.au/>

47) <http://www.deewr.gov.au/Skills/Overview/Pages/Overview.aspx>

3) 「호주 기술법안」(Skills Australia Bill 2008)

동법은 정부에게 현재 및 미래의 인력 개발과 노동기술 요구에 관한 조언 제공을 위한 법적 기관인 호주 기술기관(Skills Australia) 설립과 그와 관련된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정의, 목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장에서는 호주 기술기관의 설립과 기능, 3장에서는 구조와 구성원, 4장에서는 총회, 5장에서는 부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호주의 인력 기술과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교육·고용·노사관계부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호주 기술기관은 의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장관은 위원의 업무수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만족스러울 경우에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는 불만족스러운 수행이나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는 어떠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호주 기술기관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하며, 의장은 참석한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만 한다. 총회의 의제는 출석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고,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권을 갖는다.

(7) 「복지법」(Human Service (Enhanced Service Delivery) Bill 2007)

1) 목적 및 구성

동법 제3조에 따르면 동법은 등록기관 및 액세스 카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은 정의(제3절), 동법의 객체와 목적(제4절) 및 이 법의 적용(제5절)과 같은 도입 문제를 다루며, 제2장은 등록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액세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장에서는 등록을 위한 사항을 알려주

고 있다. 제3장은 액세스 카드에 대한 부분이다. 이 장은 액세스 카드 발급을 위한 사항을 알려주며, 액세스 카드 소유권 및 정보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제4장은 동법의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보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 용어 정의

제5조에서는 동법의 용어들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액세스 카드

액세스 카드는 보건사회서비스 액세스 카드, 또는 제27조 이하에 규정된 이와 같은 기타 명칭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제24조 이하의 장관이 발행하고 카드에 칩을 내장한 것을 포함한다.

②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

호주 시민은 「호주시민령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 하의 호주 시민인 개인을 의미하며, 호주 영주권자는 다음에서 의미하는 호주 영주권자인 개인을 의미한다 :

- (a) 「신세금제도(가족 지원)법」(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 Act 1999)의 제3조 또는 제8조 ; 또는
- (b) 「아동지원(평가)법」(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의 제10조 ; 또는
- (c)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1973)의 제3조 ; 또는
- (d) 「청력서비스행정법」(Hearing Services Administration Act 1997)의 제4조 ; 또는
- (e)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의 제7조 ; 또는
- (f)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의 제5G조

③ 혜택

동법에서 말하는 혜택은 연금, 수당, 할인, 보조금 또는 지불금과 소지자에게 어떤 종류의 할인 또는 지불 자격을 주는 카드 또는 바우처가 있다.

④ 혜택 카드

동법에서 혜택 카드는 다음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a) 의약품비 보조금 제도(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재정 지원 카드;

의약품비 보조금 제도 재정지원카드는 「국민건강법」(National Health Act 1953) 제84E조 하에 발행된 제약혜택재정지원카드를 의미하고, 그 법의 제84H항하에 발행된 추가적인 재정지원카드, 또는 대체재정지원카드를 포함한다.

(b) 의약품비 보조금 제도 안전망 할인카드;

의약품비 보조금 제도 안전망할인카드는 「국민건강법」(National Health Act 1953) 제84DA항하에 발행된 안전망할인카드를 의미하고, 그 법 제84H조 하에 발행된 추가할인카드, 혹은 대체카드를 포함한다.

(c) 연금수령자 할인카드;

연금할인카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하의 연금할인카드를 의미한다.

(d) 의료카드;

(e) 상호 의료카드;

상호건강카드는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1973)관련 제7조 제1항 하에 작성된 국제 협정의 호주에 방문한 본인에게 발행된 카드

를 의미한다.

(f) 의료보험카드, 그러나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1973)의 제6조 또는 제6A조에 의한 자격자 ; 또는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1973) 제3조의 호주 영주권자 정의 중에서 (f)항이 적용되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g) 연방 노인 건강 카드;

연방 노인 건강 카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또는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하의 노인 건강 카드를 의미한다.

(h) 구순구개열 카드;

구순구개열⁴⁸⁾ 카드는 구순열 및 구개열 환자 신분증으로 알려지고 호주 의료보험 CEO에 의해 발행된 카드를 의미한다.

(i) DVA 골드 카드;

여기서 보훈부(D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ustralia)는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을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보훈부 골드 카드는 귀환 건강 카드-모든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또는 「군재활 및 보상법」(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 하의 본인의 재정지원혜택을 입증하는 모든 조건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를 의미한다. 보훈부 혜택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48) 선천적인 입술의 기형으로 토순, 언칭이, 구순열이라고도 한다. 주로 윗입술에 생기며 아주 드물게는 아랫입술에도 생긴다. 구순열은 입술의 횡적 연결이 중단되어 갈라진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형의 정도는 다양해서 약간 갈라지는 경우부터 입술 전체가 갈라지고(콧구멍 밑까지), 나아가 잇몸까지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http://www.vitaminmd.co.kr/dic/disease/view.md?diseaseid=00DsT&seqno=181>].

- (a) 다음 아래 사항은 연방혜택⁴⁹⁾을 받을 수 있거나 자격이 있다.
 - (i)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 (ii) 「군재활 및 보상법」(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 ; 또는
 - (iii) (법 제11장의 의미 내에서) 「국방관련 주장과 관련된 안전, 재 활 및 보상법」(Safet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8) ; 또는
 - (iv) 「영국핵실험(치료)법」(British Nuclear Tests (Treatment) Act 2006) 의 호주 참가자; 또는
 - (v) 항공기 유지 개인 건강 계획에서 건강 결과 연구로 알려진 계획 ; 또는
- (b) F-111 항공기 봉인작업과 관련한 위로금 일시불을 받을 수 있거나 자격이 있는; 또는
- (c) 보훈부인이 될 제67조 하의 보훈부장관에 의해 결정된

(j) 보훈부 화이트 카드;

보훈부 화이트 카드는 귀환 건강 카드 - 다음의 법률 하에서 본인의 재정지원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위한-로 알려진 카드를 의미한다 :

- (a)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 (b) 「군재활 및 보상법」(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
- (c) 호주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 협정

49) 연방혜택은 (a) (연방법 하인지의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제공되는 ; 그리고 (b) 참여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리되거나 교부되는 혜택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참여기관은 다음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a) 부서 ; (b) * DVA ; (c) 호주 의료보험 CEO ; (d) 센터링크의 CEO ; (e) 호주 청력 서비스; (f) 호주 건강 서비스 유한회사.

(k) 보훈부 오렌지 카드;

보훈부 오렌지 카드는 제약혜택을 위한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하에서 본인의 재정지원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귀환 제약혜택 카드로 알려진 카드를 의미한다.

(l) 전쟁 미망인/홀아비 운송 카드로 알려지고 보훈부 장관⁵⁰⁾에 의해 발행된 카드 ;

전쟁미망인/홀아비는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제5E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m) 규정에 의해 정해진 카드 또는 바우처

3) 등 록

본인은 액세스 카드를 취득하기 전에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2장 제2절에서는 등록의 방법을 알려준다. 등록하기 위해서 본인은 자격을 지니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2장 제3절은 등록기관에 대한 것이다. 이 절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기관과 관련한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등록자격

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 연방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본인, 그리고 (b) 아직 등록되지 않은 본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할 자격이 있다.

② 등록신청

동법 제13조는 등록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본인을 대신한 타인이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서면 신청서

50) DVA 장관은 DVA를 관리하는 장관을 의미한다.

를 제출하는 것, 또는 장관에 의해 승인된 방식의 신청서(서면 여부에 따라) 작성을 통해 장관에게 등록기관에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2항에서는 서면 신청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면 신청서는 (a) 장관에 의해 승인된 형식이어야 하고, (b) 장관이 정하는 기타 특정한 정보 또는 특정한 문서⁵¹⁾를 동반한다. 이러한 형식의 승인과 관련하여, 장관은 개인정보보호감독관과 의논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감독관에 의해 작성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준수의 실패는 형식 승인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항). 또한 장관은 개인의 등록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관이 필요한 것 또는 개인의 신원을 확신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한 것이나, 등록기관에서 보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것과 같이 그가 정하는 특정한 추가 정보 또는 특정한 추가 문서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정보

제17조는 등록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단 등록이 되면, 장관은 등록부에 다음 표에 설정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표에서 2, 3, 7, 8, 9, 12 또는 17항목의 장관에 의한 결정은 입법수단이 아니다.

등록정보		
항 목	주 제	필수등록정보
1	성명	(a) 이러한 요건의 예외가 아닌 한(제65조), 본인의 법적 성명 ; (b) 본인이 그와 같이 면제되는 경우 - 본인의 선호 성명 ; (c) 본인이 그와 같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선호 성명은 법적 성명과 다르고 개인은 장관에게 *등록부에 선호하는 성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그 선호 성명 ;

51) (i) 본인의 신원을 확신하기 위해 장관(Secretary)에게 필요한 것; 또는 (ii) 등록기관에 보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것.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등록정보		
항 목	주 제	필수등록정보
		<p>(d) 본인이 다른 성명을 갖고 있거나 등록부에 성명을 기재하기 위해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또는 장관(Secretary)에게 그 성명이 알려진 경우 - 그 기타 성명 ;</p> <p>(e) “Mr”, “Mrs”, “Ms”, “Miss” 또는 “Dr” 호칭으로 알려져 있어서 본인이 등록부에 그 호칭을 기재하는 것을 장관에게 요구하는 경우 - 그 호칭 ;</p> <p>(f) 호주 또는 영국 훈장 제도에 따라 훈장을 수여받은 본인이 등록부에 그 훈장을 기재하기 위해 장관에게 요구하는 경우 - 그 훈장 ;</p>
2	출생	장관이 *등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 외의 출생일
3	시민권 또는 영주권	<p>(a) 본인이 호주 시민인 경우 - 그 사실 ;</p> <p>(b) 본인이 호주 영주권자인 경우- 그 사실, 그리고 장관이 정한 그 사실에 관한 기타 정보 ;</p> <p>(c) 본인이 국제 협정,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1973) 7(1)에 따라 호주와 외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관련된 호주 방문객인 경우 - 그 사실, 그리고 장관(Secretary)이 정한 그 사실에 관한 기타 정보 ;</p>
4	원주민 지위	<p>(a) 본인이 원주민(「원주민 및 토레스해협주민법」(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ct 2005))이고, 그 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그 사실 ;</p> <p>(b) 본인이 토레스 해협 주민이고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주민법」(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ct 2005)) 그 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그 사실 ;</p>
5	성별	본인의 성별

등록정보		
항 목	주 제	필수등록정보
6	연락처	(a) 본인이 거주지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 그 주소 ; (b) 본인이 우편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 그 주소 ; (c) *등록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기 위해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그 주소 ; (d) 등록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유하기 위해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그 번호 ; (e) 시각장애가 있는 자가 본인에게 제공되는 서신을 택하는 합리적인 방법 또는 형식에 관하여 등록 정보에 기재하기 위해 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그 정보 ;
7	혜택 카드	본인이 *혜택 카드를 소유하는 경우 - 장관이 정하는 카드에 대한 정보
8	등록 현황	(a) 등록효력일 ; (b) 등록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사실 ; (c) 장관이 신분 증명이 충분하다고 정하는 경우 - “충분” (d) 장관이 신분 증명이 임시라고 정하는 경우 - “임시”
9	액세스 카드 (DVA 정보 제외)	본인이 액세스 카드를 소유한 경우 - 다음의 정보 ; (a) 액세스 카드 번호 ; (b) 액세스 카드가 발행 날짜 ; (c) 액세스 카드 유효 기간 ; (d) 액세스 카드를 위한 개인신분번호가 있는 경우 - 암호화 또는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그 번호 ; (e)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기타 정보(예: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 암호화 또는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그 정보 ; (f) 액세스 카드의 외면에 사진이 있는 경우 - 그 사진과 사진에서 파생된 수치 템플릿 ; (g) 액세스 카드 외면에 디지털 서명이 있는 경우 - 그 서명 ; (h) 액세스 카드가 만료된 경우, 또는 정지,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 - 그 사실 ;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등록정보		
항 목	주 제	필수등록정보
		(i) *혜택 카드(*보훈부 골드 카드 외)를 소지한 경우, 장관이 그 카드와 관련된 색상을 정하고 본인이 액세스 카드에 대해 그 색상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에게 요구한 경우 - 그 색상 ; (j) 액세스 카드 외면에 출생일이 있는 경우 - 그 사실 ; (k) 액세스 카드 외면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10	액세스 카드 (DVA 정보)	액세스 카드를 소유하고 *보훈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정보 : (a) 액세스 카드 표면에 “TPI”라는 약자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b) 액세스 카드 표면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c) 액세스 카드 표면에 “POW”라는 약자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d) 액세스 카드 표면에 “EDA”라는 약자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e) 액세스 카드 표면에 “전쟁미망인” 또는 “전쟁 홀아비”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f) 액세스 카드 표면에 “보훈부 피부양자”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g) 액세스 카드 표면에 “보훈부 화이트 카드 소지자”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 그 사실 ; (h) *보훈부 골드 카드를 소지하고 장관에게 액세스 카드 색상을 골드가 아닌 것으로 요청한 경우 - 그 요청 ;
11	DVA 정보	(a) 본인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제24조에 따라 연금의 특별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 - 그 “TPI”라는 약자 (b) 양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subsection 24(3)에 따라 연금의

등록정보		
항 목	주 제	필수등록정보
		<p>특별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 - “맹인”이라는 단어</p> <p>(c) *구전쟁포로인 경우 - “ROW”라는 약자</p> <p>(d) 극도의 장애적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향군인재정지원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subsection 22(4)에 따른 특별 비율의 연금이 지불되는 경우 - “EDA”라는 약자;</p> <p>(e) *전쟁 미망인 또는 *전쟁 홀아비인 경우 - “전쟁 미망인” 또는 “전쟁 홀아비”라는 문구(사안이 요구하는 때) ;</p> <p>(f) *DVA 피부양자인 경우 - “DVA 피부양자”라는 문구 ;</p> <p>(g) *DVA 화이트 카드를 소지한 경우 - “DVA화이트 카드 소지자”라는 문구 ;</p> <p>(h) *DVA인인 경우, 본인이 군 복무 결과에 의한 지위를 갖고 장관에게 등록부에 그 지위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 그 지위 ;</p>
12	신분 증명을 위해 제출된 문서	<p>(a) 장관이 등록부 기재를 목적으로 신분증명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의 사본을 정한 경우 - 그 사본 ;</p> <p>(b) 장관이 등록부 기재를 목적으로 신분증명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정한 경우 - 그 정보 ;</p>
13	법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또는 기타 연방법이 등록부 기재를 위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 그 진술 ;
14	참여 기관	어떤 *참여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플래그 ;
15	비상결제번호	비상결제번호가 있는 경우 - 그 번호 ;
16	사망	사망한 경우 - 사망일 ;
17	기타 정보	<p>(a) 다음과 같은 기타 기술적 또는 행정적 정보 ;</p> <p>(i) 성명 또는 기타 개인 식별자에 의해서 본인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 그리고</p> <p>(ii) 장관에 의해 정해진 ; 그리고</p>

등록정보		
항 목	주 제	필수등록정보
		(iii) *등록기관의 행정 또는 액세스 카드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 (b) 법적 기구, 장관(Minister)에 의해 정해지고 이 법의 목적을 위한 기타 정보

4) 액세스 카드

제3장은 액세스 카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액세스 카드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액세스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에 맞는 자격을 지니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3절은 액세스 카드의 공식 명칭, 상징, 그리고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절은 액세스 카드 표면과 내부의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액세스 카드의 정보는 카드의 외면과 내부의 칩에 있으며, 칩은 본인의 지역과 연방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5절은 액세스 카드 소유권에 대해서, 제6절은 액세스 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① 액세스 카드 취득자격

제22조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액세스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a) 등록기관에 등록이 된 경우
- (b) 최소 18세 또는 이러한 요건의 면제대상인 경우(제65조 참조)
- (c) 시행 중인 액세스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② 액세스 카드 신청

본인 또는 그를 대신하는 타인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장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서면이든 아니든)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장관에게 액세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1)항(a)의 목적에 따른 서면 신청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장관에 의해 승인된 형식이어야 하고, 장관이 정한 신원확인 충족을 위해 장관(Secretary)이 필요하다고 정한 것, 또는 액세스 카드 결과 안, 또는 액세스 카드에 관련된 등록부에 기재되기 위해 요구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과 같은 기타 특정 정보 또는 특정 *문서에 의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 제2항 (a)에 따른 형식을 승인하는데에 장관은 개인정보보호감독관과 상의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감독관에 의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형식에 대한 승인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신청서 평가를 위해서 장관은 다음에서 정하는 특정 추가 정보 또는 특정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a) 액세스 카드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것
- (b) 신원확인 충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것
- (c) 액세스 카드 결과 안 또는 액세스 카드에 관련된 등록부에 기재되기 위해 요구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

③ 액세스카드 발행시기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액세스 카드를 발행해야 한다 :

- (a) 액세스 카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제22조 참조)
- (b) 제23조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을 대신한 타인이 신청한 경우
- (c) 본인이 장관에 의해 결정된 방식으로 인터뷰에 참석한 경우 또는 본인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제65조 참조)
- (d) 본인의 사진이 장관에 의해 결정된 방식으로 찍힌 경우, 또는 본인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제65조 참조)

- (e) 본인이 장관에 의해 결정된 방식으로 본인의 서명을 제공한 경우, 또는 본인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제65조 참조)
- (f) 장관이 그 또는 그녀가 본인임이 확실하다고 결정한 경우
- (g) 본인이 입법기구, 장관(Minister)에 의해 결정된 경우와 이 법의 목적을 위한 이와 같은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④ 액세스카드 정보

액세스카드의 정보는 카드 외면과 내장칩에 포함되어 있다. 액세스카드의 외면에는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 사진, 서명, 생년월일, 참전용사인지 여부, 연금이 지원되는 시각장애인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그리고 액세스 카드의 칩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서명, 카드고유번호, 유효기간, PIN번호, 복지카드, 의료보장번호, 긴급직불번호, 등록여부, 참전용사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다.

2. 일 본⁵²⁾

(1) 개념 및 유형

1) 바우처제도의 개념

일본에서 바우처란 개인을 대상으로 사용용도의 제한이 있는 정부의 보조금이다.⁵³⁾ 즉, 특정지출을 위한 개인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바우처의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적 특질이 추출되는데 첫째, 바우처는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제도인 것이다.⁵⁴⁾

52) 이하 정영훈, “일본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3.3., 수정·보완하였음.

53) 西崎文平, “バウチャーによる公共サービス改革の可能性－制度改革の有力な選択肢の一つに－”, 月刊官界 27(9), 2001.9, 117面.

54) 西崎文平, 前掲論文, 118面.

그리고 둘째, 특정 지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제한이 필수적이다.

2) 바우처제도의 유형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개호보험, 장애인자립지원, 공립의 고교, 대학, 어린이원(가칭) 등에 이미 바우처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바우처제도(준시장)에 공통된 것이라는 인식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⁵⁵⁾

예컨대, 개호보험 바우처의 경우에 시·읍·면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전에 이용권을 교부하고, 그것에 의해 현물급부에 의한 서비스 주택 개수비용, 복지용구 구입비용 등의 지급 등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⁵⁶⁾

바우처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권이나 쿠폰 등과 같은 유형의 바우처 이외에도 ① 대상자에게 사전에 물리적인 증표를 교부하지 않고 대상자가 서비스 등의 계약·구입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인가의 보육시설에 아동의 보육을 맡겼을 때, 실제 부담한 보육료의 일정 한도액을 보호자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나 고령자나 장애인의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주택개수비 등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먼저 공급자에게 전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대상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분을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경우가 있다.

② 의사(擬似)바우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때 의사바우처는 개인에게 쿠폰이 배포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기관이 공급실적에 직접적으로 바우처 수급 자격자의 수에 따라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는 방식(이

55) 行政刷新會議 公共サービス改革分科會, 公共サービス改革プログラム, 2011.4, 19面;
<http://www.cao.go.jp/sasshin/koukyo-service/meeting/110112/pdf/1.pdf#search='サ?ドセクタ?から見た公共サ?ビス改革の課題'>.

56)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平成22年度介護保険事務調査の集計結果について, Vol.157,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2010.8.12, 6面.

른바 묵시적 바우처, 대리수령방식 또는 수령위임방식)을 말한다.⁵⁷⁾ 이러한 방식의 바우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령자나 장애인의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주택개량비 등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먼저 공급자에게 전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대상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분을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는 공급자에게 일정 부분만을 먼저 지불하고 사후에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잔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③ IC카드 형태의 바우처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2) 일본 바우처제도의 도입의 연혁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각종 조성제도의 실시

일본에서 바우처제도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성’ 등과 같은 명칭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바우처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낯선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규제완화와 바우처제도의 도입

일본에서 1990년대의 구조개혁기에 있어서 당대의 구조개혁의 이념적 지향과 합치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제도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1998년에 수상의 경제자문위원회로 설치된 “경제전략회의”가 그 이듬해 11월에 수상에게 제출한 답신(“일본경제 재생의 전략(日本經濟再生への戰略)”)에서였다.⁵⁸⁾ 이 답신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경제불황에 빠진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

57) 松井由佳/瓜生淑子, “ニュージールランドにおける乳幼児保育制度—幼保一元化のもとの現状とそこからの示唆—”, 奈良教育大学紀要 第59巻 第1号(人文・社会) 2010, 61面.

58) 坂田仰, “日本教育におけるバウチャー論の軌跡と行方”, ジュリストNo.1337, 有斐閣, 2007.7, 57面.

서는 관(官)과 민(民)에 대한 구조개혁의 착실한 실행을 요구하면서, 5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이들 전략 중 “건전하고 창조적인 경쟁사회의 구축과 안전망의 정비”라는 전략방안에서 구체적으로 능력개발바우처의 도입, 개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바우처방식의 선택제의 도입, 보육바우처제의 도입에 의한 보육시설 선택의 자유화를 제언하고 있다.

<표 2> 일본경제 재생의 전략에서의 바우처 내용⁵⁹⁾

<p>개인의 전직(轉職) 능력을 높이고, 고용의 안심을 확보하는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채운 전직 희망자에 대하여, 「능력개발 바우처」를 지급 ○ 「능력개발 바우처」의 상세한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1998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있는 교육훈련급부 제도를 일반회계를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 ○ 「능력개발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필요한 교육경비의 50%를 지급하고 또한 100만 엔을 한도로 함 - 지급 대상: 실제로 실업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실업전 10년 이상 연속해서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새로운 기능을 취득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 - 이용법: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등에 입학하고, 수업료 등의 교육경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불할 경우, 현금의 대신에 바우처로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액: 바우처 지급자수를 100만 명으로 하면, 1조 엔 이내로 함 ○ 통상, 공공사업은 도로 등의 물적 사회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 행하여짐.
--	--

59) <http://www.geocities.co.jp/NatureLand/9205/a20-column/2010-keizai/2ii.html>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개발 바우처」의 지급은 훈련·교육을 통해서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교육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한계적인 예산을 공공사업과 「능력개발 바우처(voucher)」 중 어느 것에 쓸 것인가는 비용지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영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공사업의 예산배분에 대한 비판이나 고용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하면, 공공사업 예산의 일부를 「능력개발 바우처」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정당화되는 것임
<p>2ii. 3.2의료·개호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서비스는 공설민영이나 민영화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계획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바우처 방식의 선택제를 도입함
<p>2ii. 3.3출생률 감소에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출생률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도모함 ○ 구체적으로는 보육 바우처제의 도입에 의한 선택의 자유화,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기업탁아소에의 지원 등 보육 제도를 충실하게 하고, 육아 감세, 아동수당 등의 확충을 도모함

이후 이들 분야에서의 바우처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사항에 포함되었다.⁶⁰⁾

(3) 일본 바우처제도의 기본원리

1) 경쟁체제의 조성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선택」과 「경쟁」의

60) 1998년 3월에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과 2001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 2008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 등.

실현이 바우처의 기본전제인 동시에 기본원리인 것이다. 또한, 바우처에는 부차적인 효과로서, 「재정지출의 삭감」 및 「고용의 창출」의 효과가 있다.⁶¹⁾

이와 관련해서 「개호보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이나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도 개호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호보험법 제70조 등).

2) 선택권의 보장

① 정보의 전달과 획득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공급자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 등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획득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대상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공급자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호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먼저 2005년에 개정된 「개호보험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호서비스 공개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개호보험법 제115조의 29). 이에 따라 개호보험의 지정사업자는 개호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보고하여야 하고, 도도부현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 정보제공(법 제75조)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평가 조치(법 제78조 제1항)에 관해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이 조항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평가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도도부현 단위

61) 内閣府政策統括官, バウチャーについて, 内閣府政策統括官, 2000, 3-4面.

에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통상 이를 “제3자 평가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업의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표되고 있다.

이상의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② 서비스 질의 확보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개호보험제도 등과 같이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요강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기준이나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을 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인정한다.

(4) 현 황

우선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분야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피보험자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급부제도”가 존재한다. 즉 이 제도는 고용보험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제도상의 사업으로, 바우처의 유형 중 사후 상환방식을 취하고 있다.⁶²⁾ 이 밖에도 청년구직자바우처사업, 긴급인재육성지원사업의 직업훈련 등이 있다.

62) 浜口桂一郎, 労働法政策, ミネルヴァ書房, 2004, 181면.

<표 3> 일본 교육훈련급부제도⁶³⁾

대상 강좌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강좌
대상 실시사업소 종류	학교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
바우처수급자수(실적치)	159,066명(2006년)
바우처수급자수의 상한	없음
바우처수급의 대상자 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는 34,603,000명(2005년)
조건 충족 자가 바우처이용이 가능한가	가능
바우처권의 표면액수가 강좌수강료에 부족한 경우, 실시 사업소가 수급자에게서 차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급부금은 개인에게 부여됨)
바우처에 의한 지급액(실적값)	11,807,547,000엔(2006)
수급자 1인당 지급 상한	○ 수급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간이 5년 이상인 자...20만 엔 ○ 수급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10만 엔
재 원	노동보험 특별 회계(고용 보험료+국고부담)
수급자의 조건	○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재직자) - 후생노동대신 지정 강좌의 수강일에 통산 3년 이상의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기간이 있는 사람. ※ 일반 피보험자기간이 도중에 중단하였는데, 그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중단 이전의 피보험자기간은 통산되지 않음

63) [http://www.jaemo.net/pdf/2001010dounyurei.pdf#search=?育訓練給付 바우챠?](http://www.jaemo.net/pdf/2001010dounyurei.pdf#search=?育訓練給付%20バウチャ?)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였던 사람(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일에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고용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직일의 다음날)이후, 수강 시작일 까지가 1년 이내 였거나, 통산 3년 이상의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기간이 있는 사람. ※ 일반피보험자는 65세의 생일의 전날은 일반피보험자가 아니게 되어, 고연령계속 피보험자로서 자격이 바뀐다. 이로 인해, 수강시작일이 66세의 생일날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안됨 ○ 과거에 교육 훈련 급부금을 수급한 적이 있는 사람 수급한 교육 훈련 강좌의 수강 시작일 이후, 통산 3년 이상의 고용 보험의 일반피보험자기간이 있는 사람.
발권의 유무	없음
바우처의 발행 시기 · 발행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의 수강 수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신청 절차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기간을 지나면 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 한 번 교육훈련급부금을 수급하면, 과거의 수강개시일 이후의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 안 되면, 새로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음
개인보조인가 기관보조인가	개인보조

그리고 개호보험에서의 바우처제도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0년 8월 12일 현재 시·정·촌(市·町·村)은 주택 개수비용, 복지용구 구입비용 등의 지급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바우처를 교부하고, 그것에 의해 현물급부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데, 개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2009년 0.6%)이다.⁶⁴⁾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표 4> 분야별 바우처제도의 현황

<p>장애인복지</p>	<p>(1)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립지원급부와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대별 ② 바우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급부: 개호급부(“대리수령방식” 또는 “수령위임방식”), 보장구의 지급 - 지역생활지원사업: 이동지원, 커뮤니케이션지원(수화통역 등), 일상생활용구의 급부나 대여, 상담지원, 복지홈 등 <p>(2) 기타 이용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문 있는 경우: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복지법」 등 ② 간접적 근거나 직접적인 근거나 전국적인 장애인정책상의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행하는 다양한 단독사업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애자의 이동축진을 위한 택시이용권교부나 배식서비스 등이 있음. 	
<p>고령자복지</p>	<p>개호보험 외의 사회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개호보험제도상의 급부 외에 일반재원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함. - 바우처의 종류나 수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함. - 바우처 예: 경로승차증, 배식서비스, 독거노인생활원조, 고령자주택개조조성, 방문이미용

64)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前掲書, 6面.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서비스, 고령자침구세탁서비스, 일상생활용구지급 등
	개호보험상의 사회서비스	- 개호보험에서는 요개호 피보험자가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사전에 보험자인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호급부 등은 대리수령방식의 바우처제도에 의해서 제공됨(개호보험법 제41조 제6, 7항, 제48조 제5, 6항 등). ⁶⁵⁾
임신·출산·보육·교육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출산 전 임부건강검진비조성, 불임치료비조성,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서비스, 영유아·아동진료비조성, 야간·일시·단기 보육서비스, 사립유치원비조성, 인증보육시설 및 인가외(認可外)보육시설의 보육료조성, 방과후아동클럽, 사립 고등학교 등 수업료경감조성 등이 있음.
	보육서비스	- 바우처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봄 ⁶⁶⁾

65) 현행의 「개호보험법」상의 급부제공방식이나 「장애인자립지원법」상의 급부제공방식을 바우처에 포함시키고 있는 입장도 있다(後房雄, “福祉國家の再編成と新自由主義 -ワークフェアと準市場”, 年報行政研究 No.44, ぎょうせい, 2009.5, 82面).

66) 駒村康平, “準市場メカニズムと新しい保育サービス制度の構築”, 季刊社會保障研究 No.180, 2008.Sum, 8-9면; 掘勝洋, 現代社會保障・社會福祉の基本問題, ミネルヴァ書房, 1997, 179面.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훈련	교육훈련급부제도	- 바우처제도 활용
	청년구직자바우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치키현에서 실시 -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토치 현이 설치한 직업상담기관에서 캐리어 카운슬링을 받고 취로를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함. - 대상자가 바우처를 교부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훈련코스를 실시하는 훈련시설에 바우처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바우처의 급부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시설에 지불하고 수강을 개시함.
	동경 치요다구(千代田區)의 강좌강습회 바우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제도의 요건 : 치요다구에 거주하는 자 - 대상자는 치요다구가 지정한 바우처제도 대상 학습기관에서 개최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각 민간학습기관에서 수강절차를 마친 뒤에 강좌를 수강함. - 대상자는 강좌수강을 마친 뒤에 각 민간학습기관으로부터 수강증명서를 받고 보조금청구신청서와 함께 구의 담당기관에 제출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친 뒤에 보조금을 지급을 받게 된다. - 보조금의 액은 수강료의 반액으로 구민 한 명당 연간 상한은 1만 엔.
주택임대료보조 ⁶⁷⁾	- 현재 시행 중임	

67) 緊急雇用對策本部 セーフティ・ネットワークチーム의 제2회 회의자료(<http://www.kantei.go.jp/jp/singi/kinkyukoyou/suisinteam/SNdai2/siryou1.pdf>)

(5) 입법례

1990년대 이후 장애인, 고령자, 출산, 육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률들이 수차례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거치고, 관련 분야에 관한 종합계획들이 수립·발전되면서 각 분야의 사회서비스들은 각각의 관련 법률과 관련 종합계획의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체계화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종래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정신보건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공통의 룰이 없고 지역에서 지방정비나 서비스공급체제가 달라서 장애종별이나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각종 서비스 공급체계가 정비되고 일원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들 사회서비스 중에는 여전히 실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급부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상당수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이들 사회서비스 바우처 중에는 관련 법률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예 : 「개호보험법」상의 각종 급부, 「장애인자립지원법」상의 각종 급부, 「고용보험법」상의 교육훈련 급부금 등), 관련 법률에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관련 복지계획 하에 조례나 요강에서 정하여 실시되어지는 것(불임치료비에 관한 조성 등), 기존의 법정 사회서비스 등에 추가적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요강을 통해서 실시되어지는 것(예 : 개호보험상의 시·정·촌(市·町·村)특별급부나 지역지원사업 중 임의사업, 복지택시이용권의 교부)들도 있다.⁶⁸⁾

68) 河野正輝, 社会福祉法の新展開, 有斐閣, 2006, 58面.

3. 영 국

(1) 개념 및 유형

영국에서는 바우처라는 용어가 card, passport, choice⁶⁹⁾, entitlement, co-production, credit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⁷⁰⁾ 그런데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와 관련하여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⁷¹⁾과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법」(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⁷²⁾에서 바우처에 대한 개념을 명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social care)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의 담당기관은 바우처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바우처에는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법률⁷³⁾상에 나타나 있는 방식에 따라서 금액바우처와 기간바우처로 나눌 수 있다.

(2) 연 혁

영국에서는 1980년대 말 대처 정권 때에,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 활용의 궁극적인 형태로서 교육 바우처에 강한 관

69) 영국의 국가보건청(National Health Service)은 NHS Choice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70) 박영길, “영국의 바우처제도”,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3.3., 13면.

71)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제17B절(section 17B) 제2조 “바우처”는 만약 보호책임이 있고 아동의 요양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지자체가 인정하며,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요양 관리를 바꾼다면 제17절 적용에 의하여 일시적인 서비스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72)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법」(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제3절 제2조 “바우처”는 만약 지자체가 승인하여, 요양대상자의 요양에 도움을 주는 요양관리자가 요양관리를 바꾼다면, 요양대상자는 요양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지역 요양 관리 서비스 방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73) 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Vouchers) (England) Regulations 2003.

심을 갖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보수당정권 아래인 1996년 4월에 의무 취학 전 4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nursery voucher scheme)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바우처의 정책목표로는 ① 「취학 전 교육(4세 아이보육)의 기회확대(보육 서비스의 이용 수준의 향상)», ②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 ③ 「친권자(보호자)에 의한 선택의 자유 확대», ④ 「서비스의 질의 향상», ⑤ 「보육 사업에 있어서의 정부에의 의존도 경감(정책실시 비용의 삭감)」이 거론되고 있었다.⁷⁴⁾

(3) 기본이념

1) 서비스 질의 향상

1996년 4월에 의무 취학 전 4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nursery voucher scheme)제도에서도 인정된 「서비스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간의 경쟁 격화와 바우처도입에 따른 커리큘럼 등의 인증기준의 명확화 등에 의해서 보육시설이나 서비스 내용에는 개선이 이루어 졌다. 특히, 1997년의 시험적 도입의 폐지 후에도 보육바우처를 계속한 스코틀랜드 지방당국의 사례로부터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 확인되고 있다.⁷⁵⁾

2) 선택의 자유

바우처의 권리행사에 관계되는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 「친권자(보호자)에 의한 선택의 자유 확대」의 이념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택권이 확대되지 못하였다.

(4) 현 황

영국의 바우처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나눌 수 있는데, 명시적 바우처에는 보육 바우처(Childcare

74) 内閣府政策統括官, 前掲論文(その概念と諸外国の経験), 18面.

75) 内閣府政策統括官, 前掲論文(その概念と諸外国の経験), 19面.

voucher scheme), 시력보정 바우처(Eye-care vouchers), 식품보조 바우처(Food vouchers), 금연보상 바우처(Stop-smoking reward vouchers), 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s), 아동저축 바우처(Savings vouchers for children) 등이 있다. 그리고 목시적(유사) 바우처에는 직업연수 바우처(Training vouchers), 학습 바우처(Learning vouchers), 병원 바우처(Hospital vouchers), 복합서비스 바우처(Multi-service vouchers), 운동건강 바우처(Physical activity health vouchers) 등이 있다.⁷⁶⁾

(5) 입법례

영국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와 관련하여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과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법」(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에서 바우처의 정의 및 종류, 관련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⁷⁷⁾ 다만, 세부 관련 사항을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 (잉글랜드) 시행규칙」(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Vouchers) (England) Regulations 2003)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 바우처는 「아동법」 바우처 혹은 커뮤니티 케어 바우처를 포함하며, 바우처의 가치는 시간 혹은 서비스를 받는 시간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를 ‘현금 바우처’ 혹은 ‘시간 바우처’라고 부른다. 시간 바우처에는 바우처 소지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서비스 공급자가 명시되어야 한

76) 이하 I.C. Elliott, P. Valkama and S.J. Bailey, “Public Service Vouchers in the UK and Finland”, in S.J. Bailey, P. Valkama and AV Antriroiko(eds.), *Innovations in Financing Public Services: Country Case Studies* (Palgrave, 2010), pp.255-259.

77) 이 바우처는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17B조 1항, 3항 그리고 2000년의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제3조 1항과 3항과 이를 근거로 국무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된다. 다만 동 바우처는 잉글랜드만을 적용지역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바우처 발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동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이를 좀 더 구체화 하면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법」 제3조에서는 요양관리자와 관련한 바우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바우처의 발행을 위한 조항은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질 수 있다. 여기에서의 ‘바우처’는 지방 당국이 요양관리자가 쉬는 동안 피간병인을 돌보는 것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우에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피간병인이 그에게 제공되었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문서를 의미한다.

한편, 제7조에서는 장애아동 관련 바우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무장관은 지방 당국이 장애아동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지닌 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의 ‘바우처’는 지방당국이 부모의 지위에 있는 자가 쉬는 동안 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아이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들 바우처 관련 세부 사항은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 (잉글랜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바우처의 가치, 바우처의 발행, 바우처의 상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조는 바우처의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 바우처는 「아동법」 바우처 또는 커뮤니티 케어 바우처를 포함하며, 바우처의 가치는 시간 혹은 서비스를 받는 시간으로 표시될 수 있다.

제4조는 바우처의 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간 바우처는 커뮤니티 케어 바우처의 경우에는 피간병인 또는 간병인에게 발행되며, 「아동법」 바우처의 경우에는 관련 부모에게 발행된다. 현금 바우처든 시간 바우처든 바우처는 발행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둘째, 휠체어 바우처와 관련하여 법 규정으로 「국가보건서비스 (휠체어 비용) 시행규칙」(the National Health Service (Wheelchair Charges) Regulations 1996)이 있다.⁷⁸⁾ 동 시행규칙 「국가보건서비스법률」(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휠체어 바우처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건서비스 (휠체어 비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휠체어의 공급에 대한 요금 부과 및 계산에 대해서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건서비스 위탁 업체가 표준 휠체어보다 더 비싼 종류의 휠체어를 사용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사용자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비용을 지불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오직 잉글랜드에서만 효력이 있다(제3조).

셋째, 시각보장구 바우처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보건서비스 (시각 보장구 비용과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the National Health Service (Optical Charges and Payments) Regulations 1997)에서 「국가보건서비스법률」(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와 관련하여 제3편 시력검사 비용에 관한 지급, 제4편 시각보장구 비용에 관한 지급, 제5편 시각보장구 수리 및 교체에 관한 비용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비 용

동 시행규칙의 제2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무장관에 의한 지시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 결정된 비용은 동법 하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공급의 측면에서 지불 또는 보상된다.

78) 휠체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과 동 법 제81조(a), 제126조 4항과 5항, 그리고 제128조 1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보건부 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시력검사 바우처

제3장에서는 시력 검사와 관련한 바우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에 의한 지불을 원하는 자는 자격의 통지를 위해 국무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안과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안과 의사 또는 안경점에 시력의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안과 의사 또는 안경점은 환자의 성명과 주소, 환자의 생년월일, 환자의 시력검사일 등 바우처의 관련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시력 검사를 받은 자는 그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바우처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시각보장구 바우처

제4장에서는 시각보장구와 관련한 바우처의 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안과 의사 또는 안경점에 의한 바우처의 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과서비스 규정에 따라 시력검사를 한, 자격대상이라고 표시한 환자 혹은 복잡한 보장구를 위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에게 시각보장구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한 안과 의사 또는 안경점은 처방된 시각 보장구와 관련한 바우처를 환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④ 시각보장구의 수리 및 교체

제5장에서는 시각보장구의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시각보장구의 수리 및 교체에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지불을 원하는 환자는 그와 같은 지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공급자에게 표시를 할 수 있다. 교체의 경우, 공급자는 교체해야 하는 시각보장구의 타입과 관련한 특별한 문자 코드를 바우처에 표시해야 한다. 수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교체 및 수리를 위한 바우처 이용과 관련해서 공급자는 교체 또는 수리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그

상환 가치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동일한 금액을 대체하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식품 보조 바우처 사업과 관련 사항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1988)과 「사회보장 기여에 관한 법」(the Society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에서 위임된 「건강 시작 계획 및 복지 식품 (개정) 시행규칙」(The Healthy Start Scheme and Welfare Food (Amendment) Regulations 2005)⁷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the Society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제175절에서는 시행규칙 및 명령 등 a권한 행사와 관련된 사항과 예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① 바우처의 발행

국무장관은 수혜자가 그가 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바우처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4주 이상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바우처는 2.8 파운드에 해당하는 음식과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바우처의 외면에는 바우처의 가치, 건강시작음식(Healthy Start food)의 설명,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바우처의 사용

수혜자는 유효기간 내에 바우처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우처는 발행 대상인 수혜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젖먹이 아이에게 발행된 바우처는 그 모(母)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이 규칙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바우처나 바우처에 의해 공급된 식품을 사거나 팔거나 이용할 수 없다.

79) Healthy Start Scheme and Welfare Food (Amendment) Regulations 2005.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05/3262/regulation/3/made>.

③ 바우처 혜택 수혜의 실패

제10조는 바우처 혜택 수혜의 실패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바우처를 받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수혜자는 국무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제8조에 따라 바우처를 받는다. 그리고 바우처의 교환 전에 바우처를 분실, 도난 혹은 우연히 파손한 경우, 수혜자의 집에서 합리적인 거리 이내에 식품 아울렛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가 1년 미만의 아동이며, 그 아동의 집에서 바우처를 교환할 수 있는 식품 아울렛이 합리적인 거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수혜자는 이를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수혜자의 상황이 인정된다면, 국무장관은 수혜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바우처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바우처의 자산

제11조는 바우처의 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바우처는 국무장관의 자산이며, 자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바우처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국무장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기간 및 장소에서 바우처를 생산하거나 배달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신탁펀드(Child Trust Fund)⁸⁰사업과 관련 사항을 「재정절약 및 출산비용지원법」(Savings Accounts and Health in Pregnancy Grant Act 2010)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정절약 및 출산비용지원법」은 영국의 새 정부가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고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즉,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우처를 받고 이를 자녀를 대신하여 투자한 후 그 자녀가 18세가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80) http://world.moleg.go.kr/content.do?nt_cd=NT003&content_id=17502.

다만, 이 제도가 2011년 1월 3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여섯째, 아동저축 바우처(Savings vouchers for children)는 구체적으로 ‘아기채권’(Baby Bonds)으로 잘 알려진 아동신탁기금 현금바우처로 2002년 8월 31일 이후 태어난 아기에게 최소 250 파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동신탁기금법」(Child Trust Funds Act 2004)에 의해 2004년 도입되었다. 바우처 소지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정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매년 1200 파운드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아동이 7세가 되면 정부는 다시 250 파운드를 입금해 주는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00 파운드를 지원한다. 1200 파운드의 면세 혜택은 해당 아동이 18세가 되기까지 유지된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재정절약 및 출산비용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은 「저축출구계좌법」(Saving Gateway Accounts Act 2009)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 동 법은 적용 대상 아동을 2004년 아동신탁기금법의 규정 내용을 바꾸어 “2002년 8월 31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월 3일 전에” 태어난 아동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동 법은 2011년 1월 3일에 자국 내에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새롭게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2011년 4월 3일까지만 적용되도록 하였다.⁸¹⁾

4. 미 국

(1) 개념 및 유형

1) 미국 바우처제도의 개념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1) Savings Accounts and Health in Pregnancy Grant Act 2010, 제1조.

바우처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도입되면 이러한 맥락에서 현금보조방식과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바우처제도는 여러 사업수행자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소비자에게 제한된 구매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⁸²⁾

2) 미국 바우처제도의 유형 및 현황

바우처제도는 그 지급형태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및 환급형 바우처로 분류된다. 쿠폰이나 전자바우처 등 바우처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되고, 서비스 거래 후에 지원금을 환급 받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형 바우처로 구분된다. 한편, 수혜대상에 따라 선별적 바우처와 보편적 바우처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수혜대상이 전체 소비자인지 특정자격요건을 갖춘 일부의 소비자인지에 따라 보편적 바우처(universal voucher)와 선별적 바우처(selective voucher, categoric voucher)로 구분된다.⁸³⁾

<표 5> 미국 바우처제도의 유형⁸⁴⁾

<p>명시적 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으로 쿠폰이나 복지카드 혹은 전산카드와 같은 전자바우처 등 명시적인 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 - 수혜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바우처, 교육 바우처 등
----------------	--	---

82) 최성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바우처제도, 현황과 전망”, 2008년 2차 서울복지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08.11.19, 11면.

83) 최성은/최석준, 전계서, 37면.

84) 최성은/최석준, 전계서, 37-41면 재구성.

	<p>급된 바우처가 공급자에게 전달되고 사업담당부서가 공급업체에게 지원액을 지급하는 형식임</p>	
<p>목시적 바우처 (공급자 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폰이나 카드 등 명시적 형태의 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보고하는 수요량에 따라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공급업체는 수혜자의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의료비보조, 보육 바우처 등
<p>환급형 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장학금 및 교사 Grant Program 권한 부여 프로그램(Cleveland Scholarship and Tutoring Program) 등
<p>보편적 바우처 (universal vouch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등
<p>선별적 바우처 (categorical vouch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단이 어떤 서비스의 소비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바우처나 식료품 바우처(Food Stamp), 주택바우처 등
<p>균일바우처 (uniform vouch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혜자가 균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차등바우처 (differentiated voucher)	- 수혜자의 자격조건이나 공급 업체의 서비스 가격조건에 따 라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는 경우	- 인디애나 주 클리블 랜드 교육바우처 등
--------------------------------------	---	----------------------------

(2) 특성 및 기본이념

미국의 바우처제도를 첫째 정책목적별로 특성을 분석해보면 시장전환형보다 복리증진형이나 특수목적형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미국의 바우처 운영이 기존의 비시장적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초점을 둔 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실제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복리증진형이나 특수목적형의 바우처도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간 경쟁 확대를 통한 시장원리를 활용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장원리보다 복리증진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인적분야나 나머지 영역의 바우처제도의 주요목적을 분석해보면 ① 시장전환형보다 복리증진형이나 특수목적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바우처의 지불방식도 쿠폰이나 증서를 사용하는 명시적 방법보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묵시적 방식이나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 등이 더 많이 사용된다. ③ 미국 바우처제도의 목적과 지불방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시장전환형일 경우에 명시적 지불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바우처의 주요 도입취지가 시장전환형이 아닌 복리증진형과 특수목적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우처의 선택·경쟁 원리에 근거한

단순한 재원절감이 아닌 공공서비스 수혜자집단의 복리증진이나 특수 목적 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⁸⁵⁾

(3) 연 혁

미국에서는 연방의 보조(block grant)를 받으면서 각주가 저소득자의 보육서비스에 보조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기관보조였지만, 1988년에 바우처의 도입도 인정을 받아서 1990년에는 원칙적으로 바우처의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었다.⁸⁶⁾

학교바우처프로그램(School Voucher Program)의 경우 1950년대에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에 의해 제안되고 도입되었다. 즉, Friedman은 1955년 처음으로 사립학교의 수업료 대신에 공적인 지불 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 교육 바우처제도를 제안했고, 1996년 이후에는 학교선택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였다. 그 후 1999년 미국 내 소수인종 60%와 미 전체 학부모 87%가 교육 바우처제도를 지지하였고, 특히 18~25세의 흑인 가운데 3분의 2가 교육 바우처제도를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⁸⁷⁾

(4) 입법례

첫째, 식료품바우처프로그램 관련 법률로는 1964년 「식료품법」(Food Stamp Act of 1964)을 시초로 하여 1977년 「식료품법」(Food Stamp Act of 1977)의 제정과 개정을 거쳐 2008년 「공중보건법」 110-246장 2008년 「음식과 약물법」(Food and Nurtion Act of 2008)으로 개정되었다.

85) 정광호, 전개논문, 2005, 82-83면; 정광호, 바우처 분석(이론과 현실), 법문사, 2010, 24면.

86) 内閣府政策統括官, 前掲論文(その概念と諸外国の経験), 20面.

87)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61123000765&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100100000&dataid=200611231447000108>

둘째, 직업교육바우처와 관련하여서는 1944년에 입법화된 「재향군인 사회적응지원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 : 일명 G.I. Bill of Rights)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군인 들의 고등교육의 재정을 일종의 바우처방식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장애복지법」(Americans Opportunity Act)(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보건복지부의 JOBS(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 교육부의 「고등교육법」(the Higher Education Act)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법안 및 제도들을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통하여 연계·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우처제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⁸⁸⁾

이와 관련하여 1944년에 입법화된 「재향군인 사회적응지원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재향군인 사회적응지원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수백만의 재향군인들을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의 제정 이후 수십 년간 동법과 그 수정안(amendments)은 재향군인의 교육과 훈련에 수많은 비용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동법은 ① 교육 및 훈련, ② 주택, 농장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대출 보증, ③ 최대 52주 동안 주당 \$ 20의 실업 급여, ④ 취업 위치 지원, ⑤ VA 병원을 위한 자재 구축 우선, ⑥ 불명예제대 병사 재검토 등의 6가지 혜택을 제공하였다.

모든 재향군인 교육 프로그램은 미 법전 Title 38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편의 제31장에서 제35장까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① 장애재향군인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31장은 군복무 중 발생한 장애를 가진 재향 군인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재향 군인이 일상생활에서 최

88)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전게서, 424면.

대의 독립을 달성하고, 가능한 최대로 적절한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31장 § 3100).

그리고 장관이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향군인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장된 평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31장 § 3105). 이러한 재향군인은 일상생활에서 최대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독립적인 생활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section 3120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31장 § 3109).

한편, 장관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재향군인,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 훈련, 기타 관련 기회의 개발과 구축을 촉진해야 된다(제31장 § 3116). 그리고 이 장에서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 또는 1973년 「재활법」 하에서의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10프로 이상, 그리고 장관이 고용 자격을 결정한 장애 재향군인에 대하여 도움이 완비되어야 한다(제31장 § 3117).

② 재향군인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32장에서는 재향군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향군인 교육 프로그램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 1985년 7월 1일 이전에 입대한 남녀에 대하여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을 받기에 달리 여유가 없는 젊은 남녀를 지원하며,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있는 남녀를 유치함으로써 미국의 모든 자원병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2장 § 3201).

또한 1977년 1월 1일 이후, 1985년 7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자는 1985년 이전에 현역으로 근무하는 동안 언제든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교육혜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선택된 경우에 이러한 자는 최소 12개월을 연속 참가해야

만 한다. 그러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규정에서 정의된 개인적 곤란을 이유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예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참여자가 제대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참여자는 12개월 기간의 끝에 프로그램의 유예 또는 제적을 허가받아야 한다(제32장 § 3221).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자는 원칙적으로 매달 월급으로부터 공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매월 공제는 25달러 이상 1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5로 나눌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금액은 재무부에서 설립한 ‘포스트 베트남 시대 재향 군인의 교육 계좌’란 명칭의 예금 펀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가자에 의한 기부는 최대 2700달러로 제한된다(제32장 § 3222).

한편, 참가자가 제대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제적되면, 이와 같은 참가자의 기부금은 참가자의 제대 날짜 또는 장관에 의한 통지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환불된다(제32장 § 3223).

③ 생존자와 피부양자 교육 원조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35장에서는 생존자와 피부양자 교육 원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미국 전쟁의 시작 이후에 군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부모가 장애가 되거나 사망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와 같은 어린이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교육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5장 § 3500).

또한 사망 또는 영구 장애 참전 용사의 생존 배우자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향군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 있는 자 혹은 그 부모나 보호자는 장관에게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장관은 신청서가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 잠정적으로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제35장 § 3513).

장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적, 직업적 또는 전문적 목표를 선택하고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혜택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 또는 직업 상담을 주선할 수 있다(제35장 § 3520). 한편 장관은 제36장의 규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각각의 자격대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자격 대상의 생활비, 수업료, 수수료, 소모품, 책, 장비에 대한 비용 및 기타 교육 비용을 충족시키는 교육 지원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자격 대상의 교육 지원 수당은 제36장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제35장 § 3531).

기관 강좌를 구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달 풀타임인 경우 788달러, 3/4 타임인 경우 592달러, 하프타임인 경우 394달러의 교육 지원 수당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농장 협력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월간 교육 지원 수당은 풀타임 636달러, 3/4 타임인 경우 477달러, 하프 타임인 경우 319달러이다(제35장 § 3532). 한편, 모든 자격 대상은 수습 프로그램 또는 다른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section 3687에 규정되어 있는 트레이닝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제35장 § 3534).

셋째, 1997년 「납세자구제법」(Taxpayer Relief Act)의 제정에 의해, 세액공제형의 바우처가 희망장학금(HOPE Scholarship Credit)과 생애학습카드(Lifetime Learning Credit)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희망장학금(Hope Scholarship Credit)은 26 U.S.C. § 25A(b)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생당 크레딧과 관련하여 (b)(1)에서는 희망 장학금 크레딧 액수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에 의해 납부된 학비와 관련 비용 100%와 1000달러를 초과하지만 적용 한도

를 넘지 않는 지불된 비용의 50%를 합친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 장학금 크레딧의 적용 제한과 관련하여 (b)(2)에서는 장학금 크레딧의 적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크레딧은 오직 2 과세연도에 허용된다. 또한 적어도 연중 이분의 일 이상 학생인 경우에 한해 크레딧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첫 2년 동안에만 허용된다. 한편, 학생이 중죄 마약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크레딧이 거부된다.

또한 자격 학생에 대해서는 (b)(3)에서 크레딧 자격 학생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65의 「고등 교육 법안」(20 USC 1091 (A) (1))의 섹션 484 (A)(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최소한 추구하는 학업을 위해 풀타임의 절반 이상을 일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b)(4)에서는 적용 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A)항에 따라 모든 과세연도 적용 제한은 사실상 2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② 생애학습카드와 관련하여 생애학습카드(Lifetime Learning Credit)는 26 U.S.C. § 25A(c)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납세자당 크레딧은 (c)(1)에서는 납세자당 크레딧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생애학습카드는 모든 과세연도 동안 모든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생애학습 크레딧은 1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에 의해 납부된 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비용 결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c)(2)는 비용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애학습 크레딧은 희망 장학금과 함께 운영된다. 따라서 희망 장학금의 대상 자격 학생은 생애학습 크레딧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생애학습 크레딧의 대상이 되는 학비와 관

런 비용은 (f)(1)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납세자,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납세자의 피부양자의 학비 및 입학이나 출석에 필요한 비용이 그 대상비용이다.

넷째, 캘리포니아 주 규정[CAL. WIC. CODE § 18926 : California Code - Section 18926] 중 의료프로그램(Medi-Cal program)과 식품 교환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카운티 건강서비스부는 군(郡(county)) 사회복지부와 함께, 의료 프로그램과 식품 교환권 수급자에 대한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 Program) 프로그램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한 식품 교환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간략화된 자격 심사를 실행해야 하며 그 대상에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 및 그들의 친권 부모 또는 보호자가 포함된다.

(b) 각 군의 복지부서는 의료 프로그램 또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 교환권 유자격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c) 군의 복지부서는 (b)항에 따라 의료 프로그램 또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에 의거해 급여를 수령할 자격을 갖출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 고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d) 식품 교환권 가구의 연도별 재평가지 군의 복지부서는 (b)항에서 확인된 개인들에게 (c)항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고지에는 의료 프로그램 또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위한 식품 수혜자의 개인 파일의 정보 이용 승인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e) 고지는 언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 및 적절한 식자성 수준으로 써져야 한다. 고지에는 의료 프로그램 및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식품 교환권 수혜자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f) 의료 프로그램 하의 의료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품 교환권 수혜자는 적격성 결정을 요청하는 고지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

서 회송해야 한다. 군의 복지부서는 고지의 수령 즉시 식품 교환권 수령인의 개인 파일이나 지원서의 정보를 활용해 즉시 적격성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에 대한 지원 날짜는 주(州)의 복지부서가 고지를 수령한 날짜로 한다. 만일 식품 교환권 개인 파일에 의료 프로그램 적격성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군의 복지부서는 식품 교환권 수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g) 만일 식품 교환권 수령자가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거나 의료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결정된다면 군의 복지부서는 즉시 처리를 위해서 식품 교환권 수혜자의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관련 정보를 주정부의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담당자는 식품 교환권 수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h) 군들은 주정부 복지부에 대한 연간 행정 예산 신청에서 이 절들의 실행을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i) 이 절은 2003년 6월 1일 이후에 실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5. 독일⁸⁹⁾

독일은 목시적 바우처(Gutschein)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⁹⁰⁾ 다만, 최근에 주택바우처제도, 「어린이보호촉진법」(베를린 주) 등이 시행되고 있다.

89) 이하 최승필, “독일의 Gutschein(Voucher) 제도에 대한 고찰”,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3.3, 요약하였음.

90) 보건복지가족부/서울여자대학교,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1, 56면.

<표 6> 현 황

사 회 보 장 행 정	실 업 지 원 제 도	<p>직업교육굿샤인 (Bildungsgutsche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청의 직접적인 금전지원이 가능하며, 선택적 방법으로 직업교육 굿샤인을 발급하게 됨.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사회법전」(SGB) III 제77조 제4항 - 구직자에게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업교육 굿샤인이 주어지게 되며, 굿샤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간 및 지역 그리고 교육목적상의 제한이 가해지게 됨.
		<p>취업알선 굿샤인 (Vermittlungsgutsche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샤인은 구직활동에서 민간직업알선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굿샤인을 발급하게 되며,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에 알선된 경우에는 연방노동청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써 2002년 4월에 도입되었음.
사 회 보 장 행 정	실 업 지 원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도는 「사회법전」 3(SGB III) 제421g조에 근거를 둬.
		<p>재편입굿샤인 (Eingliederungsgutsche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편입 굿샤인은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그리고 해당 기업주가 이에 부응하여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령인구의 근로촉진과 사회활동으로의 재편입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이 세금납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임. - 동 제도는 직업알선 굿샤인 및 직업교육 굿샤인제도와 상호 연관되

제 2 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p>어져 운영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법전」 3(SGB III) 제223조에 규정
		<p>Hartz IV 교육패키지 (Bildungspaket)상의 굿샤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9월에 마련된 Hartz IV 교육 패키지는 ① 학교기본패키지(Schulbasispaket), ② (Lernförderung), ③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을 지원(Mittagessen in Kita, Schule und Hort), ④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 참여(Teilhabe/ Kultur, Sport, Mitmachen) ⑤ 음악교육, 스포츠교육, 놀이 및 교류행사 참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위의 모든 지원에는 소풍굿샤인, 문화 및 스포츠 굿샤인 등이 지급되며,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를 해당 기관에 제시하여 비용을 결제 받음.
		<p>보육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 방식으로, 최근, 실제의 보육 량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바우처 방식이 일부의 주(베른 주)에서 도입되었음 - 베를린 어린이집 서비스바우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법인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의 「어린이보호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und Kindertagespflege; Kindertagesförderungsgesetz-KitaFöoG)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음. ②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의 입학보장 및 인원배정절차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p>zur Gewährleistung eines bedarfsgerechten Angebotes von Plätzen in Tageseinrichtungen und Kindertagespflege und zur Personalausstattung in Tageseinrichtungen; Kindertagesförderungsverordnung-VOKitaFööG)이 규정하고 있음.</p> <p>③ 또한 베를린 주정부와 시설운영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어린이집의 서비스보장에 관한 기본협약」(Rahmenvereinbarung über die Finanzierung und Leistungssicherstellung der Tageseinrichtungen)이 체결되어 있음.</p>
<p>비사회보장 행정</p>	<p>Innovation Vouch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배정하지 않고 컨설팅 바우처를 발행하여 이를 지원하는 제도 - 동 제도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바우처제도의 구성요건으로는 발행주체, 지급영역(대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업체, 사용기간을 들 수 있다. 「헌법」과 「사회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바우처의 공급주체는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이며, 바우처의 이용에 따른 비용의 결제주체이기도 하다.

지급의 대상은 국가가 배려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화할 수 있다. 지급의 유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 구입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무영역(Muss-Kategorie, Soll-Kategorie), 가능영역(Kann-Kategorie) 등의 영역은 「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의 각 조문별 근거에 따라 정

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의 방식으로 해당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따라 현물 또는 직접서비스 대신 굿샤인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행정 이외에도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영역, 예컨대, 유치산업진흥정책, 중소기업육성정책 등에도 굿샤인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6. 시사점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제한이 있는 보조금으로 정의되나, 그 개념 범위는 좀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전적인 바우처는 쿠폰(표)의 형태로 교부되어, 그것을 재화·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없다. 그러나 현재에는 IT 화의 진전에 의해 전자카드식의 바우처도 나타나고 있고, 또한 표나 카드가 발행되지 않고, 서비스 등의 계약·구입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수에 따라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가의 바우처의 도입 사례가 보여지는 주된 정책분야로는 교육·훈련, 보육, 가사, 고령자간병, 주택 등이었다. 또한, 다양한 바우처제도에 있어서 약자에의 배려나 신규참여의 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의 정책입안 및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선택의 자유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킨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바우처 방식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히려 국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바우처제도만을 위한 개별 법률(Act)을 두지 않고 있고,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하위 법령(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위임⁹¹⁾

91) 외국의 바우처제도 관련 입법례는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바우처 관련 당사자 및 하위 법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었고, 하위 법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식품법」등과 같이 개별 이용권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이용권 수행과 관련한 실제법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세 내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통한 이용권의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이용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호주의 「Human SVC 법」(안)의 경우 실제법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며 Access카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⁹²⁾

규정(시행규칙)에서는 바우처 사용 대상자, 발급대상자, 사업자, 종류, 사용방법 및 비용에 관한 지급,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전게서, 149면.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제 1 절 도입배경 및 현황

1.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①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서비스 참여 확대와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 ② 이러한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량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바우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 침체와 성장의 둔화에 따른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셋째, 정책적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의 변화와 복지행정의 지방이양 등의 변화에 따라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현 황

(1) 보건복지부 중심의 바우처

1)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현황(단위: 명)⁹³⁾

2011년 1월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업은 ① 노인돌봄종합, ② 장애인활동보조, ③ 지역사회투자, ④ 산모신생아도우미, ⑤ 가사간병방문, ⑥ 장애아동재활치료, ⑦ 언어발달지원사업, ⑧ 임신출산진료비 등 총 8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동 사업들에 대

93) <http://www.socialservice.or.kr/ptl.JspEditor.doj>

한 총 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7> 현황표

사업명	신청자			대상자 (‘11.1)	비고 (서비스 개시)
	2008년	2009년	2010년		
계	626,684	938,344	973,879	671,196	-
노인돌봄종합	8,697	8,623	26,914	35,600	2007. 5
장애인활동보조	13,177	11,318	4,628	35,097	2007. 5
지역사회투자	306,001	367,681	357,342	186,282	2007. 8
산모신생아도우미	52,052	58,747	80,395	26,542	2008. 2
가사간병방문	23,657	18,864	4,404	12,315	2008. 9
장애아동재활치료	-	20,117	1,770	34,851	2009. 2
언어발달지원사업	-	-	830	815	2010. 8
임신출산진료비	223,100	452,994	497,596	339,694	2008.12

사업 예산규모는 보육바우처와 산전진찰바우처를 제외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6,659억 원에 달하며, 수혜자는 약 41만 명에 이르고 약 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⁹⁴⁾

2) 바우처제도의 법률관계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된 법률관계 관련 당사자는 크게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 제공기관(바우처 제공 업체, 금융기관),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실질적 사업 수행기관은 종래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됨으로

94) 김종두,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검토보고, 2010.2, 8-9면.

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⁹⁵⁾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기존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정보개발원 자체 운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존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바우처 결제 승인·지불, 카드발급, 단말기 보급 등의 업무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직접 수행·관리하며 예탁금 수탁업무는 금융기관(우리은행)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⁹⁶⁾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표 8> 법률관계 표

상대방 권리/ 의무의 주체		대상자 (수혜자)		제공 기관	지방 정부	금융기관	한국보건복지정 보개발원	보건 복지 가족부
		대상 자	자 연 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서비스를 신 청 할 권리	* 예탁금 수탁업무	카드(바우처)를 발급받을 권리	
권 리 의 주 체	제 공 기 관	영 리 법 인					제공한 서비스 의 비용 청구권	
	지 방 정 부	공 법 인	수혜자로 적 합한지 심사, 승인할 권리. 보호 대상 자 의 보호를 신 청할 직권.				집행 내역을 보 고받을 권리. 보조금 예탁.	지원금을 보조받을 권리

95)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96) <http://www.khwis.or.kr/usr/boardRead.do?sd=PS&ms=75&pageIndex=1&bulletinSeq=2&listSeq=2152>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상대방 권리/ 의무의 주체		대상자 (수혜자)	제공 기관	지방 정부	금융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 복지 가족부
의무의 주체	금융 기관	영리 법인	본인 부담금을 납부 받을 권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집행 자금을 받을 권리 카드이용 수수료 청구권	
	한국 보건 복지 정보 개발원	불분명 (공법인)		대상자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결제 내역을 제공 받을 권리 지원 받은 자금을 집행	
	보건 복지 부	공법인	공 급 기 관 으 로 적 합 한 지 심 사 / 승 인	국 고 보 조 지원		관리원에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탁함.	
의무의 주체	대상자	자연인				본인 부담금 납부의 의무	
	제공 기관	영리 법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지방 정부	공법인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 의무. 결과통보 의무.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할 의무.			결과 통보 의무	
	금융 기관	영리 법인	선정 대상자에게 카드 발급 의무	대 금 을 지 급 할 의무		결제 내역을 보고할 의무	

상대방 권리/ 의무의 주체		대상자 (수혜자)	제공 기관	지방 정부	금융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 복지 가족부
한국 보건 복지 정보 개발원	불분명 (공법인)			집행 내역을 보고할 의무		대상자 정보 제공 의무. 카드 이용수수료 납부 의무.	수시/정기 보고 의무
보건 복지 부	공법인		공 급 기 관 으 로 적 합 성 심사/결과 통지 의무				

3) 문제점

첫째, 사회서비스의 바우처제도는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창출과 민간영리기업에 대한 돌봄 시장 개방, 복지예산의 삭감 등과 같은 시장 및 재정논리로 접근하게 되고, 현행과 같은 다양한 바우처 제공기관 하에서는 바우처 이용자에 의한 기관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바우처는 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시간제 노동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셋째, 바우처제도는 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성만을 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는지의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서비스의 다양성은 서비스 질 관리가 잘 조절되어진다면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에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현행 바우처의 운영에 있어서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인해 근거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자의적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 크다. 그리고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에도 바우처 운영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없어 운영기관이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바우처를 운영할 개연성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바우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170만 가구/327만 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해오던 문화바우처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여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⁹⁷⁾

여행바우처는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및 이를 통한 국내 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2011년 6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바우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⁹⁸⁾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및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스포츠

97)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mctNews/mctNewsView.jsp?pSeq=1648>.

98) <http://local.segye.com/articles/view.asp?aid=20110822001247&cid=6105030000000>.

바우처와 관련하여 2011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정보 요청 및 위탁 근거와 사회복지통합망 연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조사 및 제공 요청,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안 제44조의1 신설).⁹⁹⁾

둘째, 저소득층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산·소득 조사 및 자료 제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한의 위탁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됨을 명기하였다(안 제46조).¹⁰⁰⁾

제 2 절 현행 법체계

1. 현 황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월 5일 전까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기본적인 근거법은 「사회복지 사업법」인데 동법 제33조의7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

99) 제44조의1 (자료제공의 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2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조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0)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②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6조). ③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다(안 제9조). ④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다만,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

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30조).

개별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서 보육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에서 바우처의 신청 및 발급, 전자적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011년 10월 5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2월 5일 부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 중 제3항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관련한 지침으로는 관련 지침으로는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지침, ② 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침, ③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지침, ④ 가사간병방문사업지침, 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 ⑥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지침, ⑦ 출산전진료비사업지침 등이 있다.¹⁰¹⁾

<표 9> 현행 관련 지침

지침(2011년 기준)	주요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지침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차등화

101) <http://www.socialservice.or.kr/ptl.JspEditor.doj>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지침(2011년 기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지원액 : 월 212,400원 ~ 322,920원 -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서비스 단가 : 방문서비스 시간당 9,200원, 주간보호서비스 일당 27,600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 - 보건소 담당자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발급 신청하고, 전담금융기관(KB 국민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서비스 제공자(도우미)는 매일 대상자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받아 결제 처리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의 도우미 표준서비스 이용
가사간병방문사업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산모 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서비스는 현물(“바우처 이용권”)제공 원칙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으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구매

지침(2011년 기준)	주요내용
출산전진료비사업지침	<p>○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p> <p>- 제7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전자마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p>

2. 타법과의 관계

위의 우리나라의 마우처제도의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마우처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마우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고려할 점이 현행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별 마우처 근거법률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마우처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마우처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그 적용대상은 같으나 사업범위가 다르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양자의 법률이 서로 배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어 마우처 관련 기관간의 정보 협력관계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2년 2월부터 시행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한 사항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법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중전 입법안 분석

1.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

2009년 7월 15일 제안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사회서비스의 수량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해당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이 법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

된 증표)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① 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③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등록(안 제14조)
- ④ 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8조)
- ⑤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표 10>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체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u>제 1 장 총 칙</u>	
제 1 조 목적	제21조 사업자의 지위승계
제 2 조 정의	제22조 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
제 3 조 적용범위	제23조 청문
제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 과징금 처분
	제25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u>제 2 장 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u>	<u>제 5 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 조성</u>
제 5 조 사회서비스제공계획	제2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 6 조 사용자의 비용부담	제27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 7 조 사회서비스의 차등지원	제28조 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
<u>제 3 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u>	제29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 8 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제30조 교육과 훈련
제 9 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0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u>제 6 장 보 칙</u>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31조 보고 및 검사
제1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32조 비밀누설 금지
제13조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제 4 장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	제 7 장 벌 칙
제14조 사업자 등록	제34조 벌칙
제15조 결격사유	제35조 벌칙
제16조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제36조 벌칙
제17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제37조 벌칙
제18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8조 양벌규정
제19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9조 과태료
제20조 부당이득의 징수	<u>부 칙</u>

(3) 검토¹⁰²⁾

① “사회서비스”와 “(수요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규정만을 두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 이용권 자체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거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용권 관리의 문제 역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내용 외에도 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하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고, 안 제5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 조성”에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자 정보 제공 등 사회서비스 자체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자체로도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것인지, 사회서비스에 관한 것인지 체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안 제2조제5호에서 사회서비스를 <관할>한다는 의미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복지부장

10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검토보고, 2010.2, 19-65면.

관·광역단체장·기초단체 장 모두를 포괄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이라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상황(계획수립, 발급 여부 결정 등)에서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기 보다는 개별 조문에서 주체가 복지부장관인지, 광역단체의 장 또는 기초단체의 장인지를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③ 안 제3조에 따르면, 보육 바우처에 관한 사항에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나, 동 법의 규정이 없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에 관한 파악이 어렵게 된다.

④ 안 제4조제1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1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현물급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 방식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으로까지 두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적극 홍보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의 구상은 가능하다.

⑤ 안 제15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한” 전과자에 대하여만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대상이 취약계층임을 고려한다면 결격사유의 범위를 재범가능성이 큰 행위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⑥ 안 제17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에, 제28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의 구상이 필요하다.¹⁰³⁾

103) 이봉주 외,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등록기준 개발,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

⑦ 안 제19조는 사업자와 관리기관의 관계에서 비용의 청구·지급·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관리기관”의 획정이 필요하다.

⑧ 법률안을 크게 총칙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 벌칙, 부칙의 체계로 구성된다.¹⁰⁴⁾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법률안 체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의 경우 제23조의 청문에 관한 규정은 제4장(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있기 보다는 제6장 보칙에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인다.¹⁰⁵⁾

<표 11> 법률안 체계

	한국법제연구원 ¹⁰⁶⁾	법제처 ¹⁰⁷⁾	국 회 ¹⁰⁸⁾
총칙 규정	1. 목적규정 2. 정의규정 3. 해석규정 4. 기타의 총칙적 규정 (1)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2) 이념규정·책무규정	1. 목적규정 2.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3. 정의규정 4. 해석규정 5.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6. 적용범위 규정	1. 목적규정 2. 정의규정 3. 해석규정 4. 적용범위 5. 기본이념 6. 국가 등의 정책·시책 7. 의무·책무·책임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원, 2010, 13면.

104)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2-14면.

105)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3조)과 환경해양관리(제120조) 등은 청문 규정을 보칙규정에 두지 않고 본문 규정에 두고 있다.

106)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107) 법제처, 전제서(법령입안 심사기준), 2006.

10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08.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국 회
실 체 규 정	1. 사업규제법규 (1) 허가제에 관한 규정 (2) 기타 사업규제법규에 있어서의 공통규정에 관한 사항 2. 조성법규 (1) 보조금교부 (2) 조성의 형식으로서의 손실보상 (3) 저이자금의 용자 또는 알선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2.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등록 및 신고 3. 결격사유 4. 과징금	1. 허가기준 2. 허가사항의 변경 3. 결격사유 4. 부관 5. 영업의 지위승계 6. 취소 7. 과징금 8. 부담금 9. 가산금 및 연체료 10. 행정강제
실 체 규 정	(4)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또는 대부 (5) 정부출자 (6) 세제상의 특별조치 (7) 이자지급·사채인수 등 3. 자금부여법규 (1) 자격자의 명칭과 업무 (2) 자격자의 사명, 임무 (3) 무자격자의 업무종사 금지규정 (4) 명칭사용제한 (5) 자격부여방법 (6) 자격자의 결정기준 (7) 결격사유 (8) 자격자의 업무와 관련한 의무 (9) 자격취소 기타 처분 (10) 자격자의 단체 4. 기타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	5. 부담금 6. 연체금과 가산금 7. 행정강제 8. 보조·출자·출연·용자 9. 국유자산 등의 관리·처분 10. 조세법 규정 11. 재정·회계제도 12. 기금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14. 자격부여 15. 외국인의 지위 16. 검사(검정) 17. 위원회 18. 특수법인 19.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20. 행정지도	11. 보조금 12. 출연금 13. 자금의 용자 등 조성제도 14. 국·공유재산의 양도·대부 및 사용·수익 15. 주세 등의 특별조치 16. 사회보장의 비용부담과 수급권의 보호 17. 재정·회계 18. 기금 19. 자격부여 20. 겸직 금지(제한) 21. 위원회 22. 검사기관 23. 위임입법 24. 외국인의 지위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국 회
	(1) 위원회에 관한 규정 (2) 연체료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21. 행정쟁송	25. 특수법인 26. 행정지도
보 칙	1. 보고의무 2. 출입검사 또는 조사 3. 청문 4. 행정심판·행정소송 5. 손실보상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권한의 위임·위탁규정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9. 기타	1. 수수료 2. 출입검사 및 질문 3. 보고의무 4. 청문 5. 권한의 위임·위탁 6.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7.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1. 보고·검사(조사) 2. 청문 3. 공청회 4. 권한의 위임·위탁 5. 대리·대행 6. 행정심판·행정소송 7. 손실보상 8. 손해배상 9. 수수료 10.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 명칭의 사용금지 12.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협의 13. 연차보고서 14. 소멸시효
벌 칙		1.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2. 구성요건 3. 법정형 4.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경·면제, 친고죄 등 5. 법령 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	1. 벌칙의 위임 2. 구성요건 3. 법정형 4.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경·면제, 친고죄 5. 양벌규정 6. 과태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국 회
		6. 형법의 적용제한 규정 7. 양벌규정 8. 과태료	
부칙		1. 시행일에 관한 규정 2.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3.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 4.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5. 적용례에 관한 규정 6. 특례에 관한 규정 7.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9.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시행일 2. 유효기간 3. 다른 법률의 폐지 4.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5. 적용례·특례 6. 경과조치 7. 다른 법률의 개정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부칙의 개정방식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9년 11월 25일에 제안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현행 법 체계는 확대되는 이용자 지원 방식을 활성화하고 지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이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이 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5조).

③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다(안 제6조).

④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3조).

⑤ 이용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한다(안 제15조).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23조).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안 제25조).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성과관리 및 사례관리를 하도록 한다(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표 12>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체계

<u><「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u>	
<u>제 1 장 총 칙</u>	<u>제 5 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의 설치 등</u>
제 1 조 목적	제23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의 설치
제 2 조 정의	제24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화
제 3 조 이용권 제공의 기본원칙	제25조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 4 조 국가 등의 책무	제26조 제공자의 정보제공
<u>제 2 장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u>	제27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제 5 조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28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
제 6 조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결정	제29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사례관리
제 7 조 이용권의 발급	제30조 제공자 등의 교육
제 8 조 이용권의 기재사항	<u>제 6 장 보 칙</u>
제 9 조 이용권의 이용	제31조 보고와 조사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2조 비밀누설 금지
<u>제 3 장 이용자의 보호 및 지원</u>	제33조 권한의 위임
제1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u>제 7 장 벌 칙</u>
제12조 차등지원	제34조 벌칙
제13조 본인일부부담금	제35조 과태료
제14조 이의신청	<u>부 칙</u>
<u>제 4 장 제공자의 지정 등</u>	
제15조 제공자의 지정	
제16조 제공자의 지정취소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17조 취소의 예고통보 등
- 제18조 제공자의 사업 중단 신고 등
- 제19조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공개 등
- 제20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 제21조 과징금
- 제22조 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검토¹⁰⁹⁾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개념으로 한정되어 사회복지 이외에 폭 넓게 사용되는 바우처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② 동 법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과 사회서비스 이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③ 매년 5개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고, 비용부담·감면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계획에 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매년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고 사업마다 대상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④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 여부가 해당 서비스 이용권 발급 여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발급에 필요한 사항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외의 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⑤ 안 제7조와 같이 발급 권한 및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에 두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10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0.2, 12-54면,

⑥ 동 안은 차등지원에 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임의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모두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서비스 유형을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⑦ 동 안은 제15조 제2항에서 비영리기관의 우선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비영리조직을 우선적으로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영리법인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동 안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아닌 전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⑨ 안 제7장 벌칙 부분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공인력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이 필요하다.

⑩ 동법 제17조 취소의 예고통보 등은 청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보칙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안)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안) 비교

	정부안	곽정숙의원안
구조의 중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부	○정부안에서 더 나아가 <절차> 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정부안	곽정숙의원안
	<p>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부정사용 및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적 제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 ⇒절차+관리</p>	<p>한 목적을 선언하고, 주체인 “이용자 - 제공자 -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성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제공기관·종사자 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규정을 두는 등 <실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음 ⇒절차+관리+실체</p>
<p>법안 제명 및 목적</p>	<p>○이용권 관리</p>	<p>○이용권 관리+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p>
<p>전문기관 위탁 방식 및 전담기관 설치 방식</p>	<p>○사회서비스 관련 <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이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p>	<p>○제23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업무로 서비스 표준화, 품질·성과·사례관리 및 연구·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전담기관의 법적 성격이 법인인지 여부와 정부조직인지 여부는 법률안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p>
<p>사업자 운영방식</p>	<p>○등록제</p>	<p>○지정제</p>
<p>업무수행 기관</p>	<p>○전문기관에 위탁</p>	<p>○전담기관 설치</p>
<p>규율대상의 범위</p>	<p>○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¹¹⁰⁾</p>	<p>○사회서비스 이용 전반</p>

110)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안	곽정숙의원안
법체계	○사회서비스이용권과 사회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용자 - 제공자- 전담기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의 주체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
용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사회서비스 “사업자”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용어를 사용
국가 등의 책무	○안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안 제4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계획의 수립과 시행	○비용부담·감면기준, 사용방법은 계획의 내용에 포함	○불 포함
발급 등	○이용권의 발급은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기관(시군구)”가 담당	○안 제6조제3항에서 조사의 내용 중 발급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이용권의 발급은 “사회서비스전담기관”에서 담당 ○이용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차등지원	○사용자의 주관적인 욕구와 비용 선택에 따라 관리기관이 사회서비스의 수준 및 유형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부안	곽정숙의원안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담당	○“관리기관”(복지부, 시도, 시군구)	○“전담기관”이 수행
제공자의 사업 중단 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신고	○중단 예정 60일 전까지 신고하고 지정권자는 철회 권고 등의 조치를 강구
제공자가 종사자의 근로의 권리를 보호 규정	○없음	○있음

3. 「사회서비스법」(안)

2010년 11월 24일에 제안된 「사회서비스법」(안)(서갑원의원 대표발의)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모든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현물 지급이나 이용권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비스이용자와 제공사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이 법은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적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②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욕구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안 제2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④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위원회를 둔다(안 제7조).

⑤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대상과 서비스 지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⑥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대상자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결정하도록 한다(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⑦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안 제16조).

⑧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다(안 제17조).

⑨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안 제20조).

⑩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안 제21조).

⑪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나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2조).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4조).

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명하거나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6조제3항).

⑮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설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9조 및 제30조).

<표 13> 「사회서비스법」(안) 체계

<「사회서비스법」(안)>	
<u>제 1 장 총 칙</u>	<u>제 5 장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u>
제 1 조 목적	제26조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 2 조 정의	제27조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 종사자의 의무
제 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제 6 장 사회서비스 평가 등</u>
<u>제 2 장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u>	제29조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제 5 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제30조 사회서비스의 정보공개
제 6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 7 조 사회서비스위원회	<u>제 7 장 보 칙</u>
제 8 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1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 9 조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심사청구
<u>제 3 장 사회서비스의 이용</u>	제34조 행정소송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의 기본원칙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 사회서비스 이용대상	
제12조 사회서비스 지급방식	<u>제 8 장 벌 칙</u>
제13조 사회서비스 이용신청	제36조 벌칙
제14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37조 양벌규정
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결정	제38조 과태료
제16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u>부 칙</u>
<u>제 4 장 사업자 등록 등</u>	
제17조 사업자 등록	
제18조 사업자의 결격사유	
제19조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사회서비스법」(안)>

제20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2조 사업자이 등록 취소 등
제23조 청문
제24조 과징금처분
제25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 검토

①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과 관리법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광의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서비스의 제공 목적과 담당 기관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이 법안의 경우에 바우처제도 본연의 특성 즉, 공급자간의 유효 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의 선택권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생활부조를 수급하는 권에 관한 규정이나, 대상별 특별규정을 두어 공급자간의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의 선택권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③ 이 법안의 제목과 같이 한다면 초정부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데, 법안에서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법 제5조제1항),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견해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④ 동법 제23조 청문에 관한 규정은 보칙으로 두고, 제6장 사회서비스 평가 등의 표제는 제29조의 제목과 동일하게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등으로 어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7장 보칙 제31조 부당

이득의 징수 규정은 제3장 사회서비스의 이용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¹¹¹⁾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

2010년 6월 28일 제29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제출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대안)이 체계자구의 검토를 거쳐 2012년 2월 시행예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법」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대안에 영향을 미친 입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로 되면서 수정된 체계 자구에 대해 보기로 한다.

(1) 대안의 영향을 미친 입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은 위의 3가지 입법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입법안을 창출하였다기 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제출안)의 일부를 그대로 원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목적(제1조), 국가

111)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산업재해보상법」(제84조)은 부당이득의 징수를 보칙이 아닌 본문에 규정하고 있다.

등의 책무(제4조), 제9조(이용권의 이용), 이용권자의 권익 보호(제11조), 제공자 등의 교육(제30조) 등의 규정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제출안)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 사용자의 비용 부담(제6조),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제7조), 제3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이하 제7장 벌칙 규정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이 반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에서 본 양 입법안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에 남아있게 되었다.

(2) 용어의 통일(안 제28조-제30조)

법률안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권한의 일부를 위탁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용어를 ①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관계 전문기관’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수탁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다.

원 안	검 토 안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관계 전문기관</u>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u>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u> -----.

원 안	검 토 안
<p>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p>	<p>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u>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u>----- ----- -----</p>
<p>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관계 전문기관</u>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원안과 같음) ② ----- ----- -----<u>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u>----- ③ (원안과 같음)</p>

(3) 약칭된 용어의 사용(안 제9조)

법률안 제9조는 ‘제5조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제5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구청장이 자치구의 구청장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원 안	검 토 안
<p>제 9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제5조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u> 사회서비스</p>	<p>제 9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 -----<u>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u>-----</p>

제 3 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원 안	검 토 안
<p>이용권을 발급해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 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u>구청장</u>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1.~3. (생략) ② (생략)</p>	<p>----- ----- ----- ----- -----<u>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p> <p>1.~3.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p>

(4) 기타 자구의 정리(안 제23조, 제36조, 제40조)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는 등 자구를 정리하였다.

원 안	검 토 안
<p>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5. (생략)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u>성폭행 또는 성희롱</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7. (생략) ② (생략)</p>	<p>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 ----- -----<u>성희롱 또는 성폭력</u>-----</p> <p>1.~5. (원안과 같음) 6. ----- ----- ----- 7.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p>

원 안	검 토 안
<p>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2. (생 략)</p> <p>3.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p> <p>4. 제19조제7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p>	<p>제36조(벌칙) ----- ----- -----.</p> <p>1.~2. (원안과 같음)</p> <p>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② (생 략)</p>	<p>제40조(과태료) ① ----- ----- -----.</p> <p>1. (원안과 같음)</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¹¹²⁾</p> <p>② (원안과 같음)</p>

112) 「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생 략)

4.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생 략)

제 4 장 입법모델

제 1 절 입법모델의 방향성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그 범주로 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①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②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③ 건강관리 서비스, ④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⑤ 사회적응 지원 및 상담·지도 서비스, ⑥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⑦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⑧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2조). 이러한 법률의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어서, 다른 기관에 의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까지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법은 “사회서비스”와 “(수요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이 극히 적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대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서비스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적인 지위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법 제3조에 따르면, 동 법의 규정이 없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기본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요국의 입법례는 바우처제도만을 위한 개별 법률(Act)을 두지 않고 있고,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하위 법령(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바우처를 사회서비스 제공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우처제도가 사회서비스의 목적이 아닌 전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 사용의 장려가 위의 입법안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우처가 보건복지부의 업무만이 아니라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환경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에서도 그 기본적인 급부와 관련하여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율할 일반법 내지 기본법의 제정필요성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물론 그런 급부영역이 바우처라는 수단을 통한 전달방식에 적합하고 타당한지 검토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다른 법률에서는 기본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사회급부의 성격에 따라 준용의 범위를 조정하면서 바우처 이용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우처라는 제도와 그 법률관계가 관련부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들 역시 제도에 대한 신뢰 내지 예측가능성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2. 기본법에 관한 주요내용

(1) 개념

기본법에는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예: 「교육기본법」등)와 주로 국정의 중요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로서,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말한다. 또한,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예: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등)도 있다.¹¹³⁾

(2) 유형 및 특징

1) 유형

기본법의 유형은 기본법의 성격과 효력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난다.¹¹⁴⁾

우선, 기본법의 성격에 따라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4>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

유형	내용	예
이념형 (선언형)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 -이 형의 기본법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으로서 기본적인 이념·원칙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국민에게 널리 제시한다는 역할도 담당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정책형	-각각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	-「농업·농촌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113)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9-20면.

114) 박영도, 전거서(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119-120면.

제 4 장 입법모델

유 형	내 용	예
	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	-「과학기술기본법」
대책형	-일정한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혁추진형	-국정상의 중요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개혁의 기본이념·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스스로 그 개혁의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개혁추진을 위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또한, 기본법의 효력범위에 따라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¹⁵⁾

<표 15>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

유 형	주요내용	비 고
제1 유형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동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	「고용정책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세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전기통신기

115) 박영도, 전거서(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345-346면.

유 형	주요내용	비 고
	<p>무, 동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준 및 제정·개정시 기본법의 취지준중,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 도입할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동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의 유형</p>	<p>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자격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해양개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p>
제2 유형	<p>법률에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면서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의 운영을 자체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본법을 구체화·세부화 하는 다른 개별 법률이 없는 법률의 유형</p>	<p>「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p>

2) 특 징

기본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규정적 특징과 법형식상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정적 특징으로는 원칙적으로 ① 내용의 포괄성·추상성, ② 다수의 프로그램적 또는 훈시적 규정, ③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거의 없음, ④ 조직법적 색채가 강함, ⑤ 간접적 재판규범성, ⑥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지침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법형식상의 특징으로는 이념,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방식, 책무 등에 관한 총칙적 사항, 시책의 메뉴 등 시책의 추진체제를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내용으로 하는 것이다.¹¹⁶⁾

3.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1) 기본법 유형의 선택

현행 바우처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바우처의 다양성에 비해 현행 바우처의 운영에 있어서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뿐더러,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에도 바우처 운영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에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규정들을 각각에 두는 방안은 법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바우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이 없이 바우처제도의 관할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국민들의 권리 등을 침해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종다양한 바우처제도에 대한 기본방침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법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바우처와 관련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때의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및 기본적 추진체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세지 발신기능 등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기본법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바우처 관련 기본법은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의 모든 성격을 가지겠지만, 이념형에 더욱 큰 비중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은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그 규범영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관계

116) 박영도, 전거서(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121-126면.

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바우처 관련 기본법은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바우처의 운영 목적·유형에 따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기본법 유형 중 제1유형에 따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기본법의 기본 모형안

1) 법체계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기본법 제정 시 입법모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법 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표와 같은 표준적인 모형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기본법 법체계¹¹⁷⁾

규정 순서	규정 내용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본이념)	기본방향, 기본원칙
	제 3 조 (정의)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제 5 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 2 장 ○○정책의	제 6 조 (○○기본계획)	
	제 7 조 (시행계획)	

117) 박영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132-133면; 강현철, 국방·군사시설 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59면; 박영도, 전거서(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348-349면.

제 4 장 입법모델

규 정 순 서	규 정 내 용	비 고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 8 조 (○○위원회)	
제 3 장 ○○		정책의 구체적 내용
제 4 장 보 칙	제 0 조 (국회보고)	연차보고
	제 0 조 (권한의 위임, 위탁)	
제 5 장 벌 칙		

다만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 시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법의 성격은 이념형으로 그리고 효력은 제1유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의 기본체계 중 제1장 총칙과 제2장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부칙의 구조를 가지는 기본법 제정을 구상할 수 있다.

2) 범위 설정의 문제

① 「사회서비스기본법」

「사회서비스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의 범위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규정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고, 이때 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유형 중 제1유형에 대한 기본법 제정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복지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바우처제도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유형에 대한 기본법 제정 시에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실제적·절차적 사항을 모두 기본법이 관할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별 법률은 개별적인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게 될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과연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목적이 복지인지 투자인지 따라 다른 형태의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한 새로운 바우처제도 관련 제도의 도입 시 이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기본법」

「사회서비스이용권 기본법」은 사회서비스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부분 보다는 이용권에 중점을 두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때 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유형 중 제1유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프로그램적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방안이 사회서비스의 목적과 범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바우처제도와 관련하여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유형 중 제2유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서는 동 기본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바우처제도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운영의 탄력성과 목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포섭력이 떨어진다. 예컨대, 동 기본법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 왜 보건복지부가 법률 제정의 주체가 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3) 입법사항의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장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기본책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시책 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국민의 의사 반영 등,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배려,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정비 등에 대한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¹¹⁸⁾

제1장의 총칙 장에 구성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상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고려하여 투자진흥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민주주의와 연대책임에 기초하여 인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 생활조건의 평등, 공동체 생활에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투자진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보장·사회복지·교육행정 등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대한 법제적인 분석에 대한 범위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별에 관한 것이므로 바우처 지급영역에 대한 규정을 기본법에서 규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 기본법에서 필요에 따라 기본법을 준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우처를 법적 측면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개념의 범위 역시 기본법에서 나열해 주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겠다.

118) 이하의 내용은 일본의 「공공서비스기본법」의 내용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회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사회서비스개념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법에서의 개념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이념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자결권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이 건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이념의 구체적 목표로서 일본의 「공공서비스기본법」 제3조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수 있다. 즉, ① 안전하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확실하고 효율적인 동시에 적정하게 실시되는 것. ②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하는 국민의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③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④ 사회서비스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학습의 기회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이 사회서비스의 실시 등에 반영되는 것. ⑤ 사회서비스의 실시에 의해 불평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하면서도 신속히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기본이념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기본책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국가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는 동시에, 국가에 관계되는 사회서비스를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분업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책정 및 시행을 하는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와 관계되는 사회서비스를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또한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을 자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다섯째,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시책 장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사회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사회서비스의 실시에 대해 당해 위탁을 받은 자 간에 각각 역할의 분담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¹¹⁹⁾

둘째, 국민의사의 반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의 책정 과정의 투명성의 확보 및 사회서비스의 실시 등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공표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에 관해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사회서비스의 실시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배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실시가 국민의 혜택으로 되는 것에 대해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환경의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안전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적절하면서도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기타의 노동 환경의 정비에 관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사업자의 운영방식을 등록제와 지정제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등록제’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기관이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 반면에 ‘지정’은 ‘등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게 설정되어

119) 81 BverfGE 88, 203, 286. 이는 독일의 제2차 낙태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낙태를 민간의 단체의 상담절차를 통해 생명보호를 추구하려는 국가에게 상담이 국가의 과제로 여전해 남는다는 점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권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공급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행정기관이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급 상황과 사업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결정할 수 있고, 공급기관은 적정 시장 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제와 지정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도 어떠한 기본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겠지만, 「사회서비스 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의 형태의 입법모델 하에서는 기본법에서 이를 정할 사항은 아니고, 양자의 선택 문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률에서 개별 바우처제도의 목적 및 현실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운영방식을 등록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서비스와 유사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¹²⁰⁾은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 2 절 종전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 제1안 : 2개 법률로 입법화하는 방안(「사회서비스 이용관리법안」+「사회복지 사업법」)

이 안은 사회서비스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안)과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2개의 기본법의

120)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립을 구상하는 것이다.

<표 17>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국가재정의 효율화 목적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절차적 규정과 관리 규정 및 기반 조성 관련 명문 근거 제시
「사회복지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법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 분야 세부 절차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1) 장 점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을 두고 사회복지 사업법을 두는 방안으로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로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실체적·절차적 명문규정을 두게 되어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바우처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사항, 바우처제도의 기반 조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바우처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 점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의 범위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지 않은 바우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사용에 관해서도 각각의 관계 기관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적·유기적으로 바우처제도를 동 법안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 법안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상에 다른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8>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 비교¹²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
신청권자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안 제8조)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 따 른 발급대상자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자료 또는 정보이용에 관한 고지	(제33조의2제3항) 법적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이 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없음
(신청에 따른) 조사	(제33조의3제1항)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 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 업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에 대한 실시되는 급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실시 여부를 결	(안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 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 조사

121)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검토보고, 2010.2, 34면.

제 4 장 입법모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제출 요구	(제33조의3제2항)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 대상	(안 제9조제1항) 신청인 대상
조 사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	(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항 증표제시 제4항 정보 및 자료 부정 사용/누출금지 제5항 조사결과 관리
관계기관 협조	(제33조의3제4항)	(안 제9조제2항)
행정기관 결정 및 통지	(제33조의4)	(안 제10조제1항)
정보의 파기	(제33조의8)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5년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함.	없음

2. 제2안 : 2개 법률로 입법화하는 방안(「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사회복지사업법」)

이 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2개의 법률로 분법화하는 것이다.

<표 19>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및이용권 관리에관한법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의 이바지가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및 전담기구 등에 대한 명문규정 제시
「사회복지 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법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 분야 세부 절차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1) 장 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 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를 관할하게 된다. 이는 곧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단 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 법률안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복지

지서비스의 범위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될 우려가 있어서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3. 제3안 : 2개 법률로 분법화하는 방안(「사회서비스 법률」(안)+「사회복지 사업법」)

이 안은 「사회서비스법률」(안)과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2개의 법률로 분법화하는 것이다.

<표 20>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임 ·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음
「사회복지 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법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 분야 세부 절차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1) 장 점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사회적 욕구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동 법률에 의한 바우처제도의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단 점

「사회서비스법률」(안)은 그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바우처제도의 양상이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바우처제도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동 법안은 공급자간의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의 선택권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전무하다.

4. 검토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현행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와 관련한 법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 및 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두고, 복지 및 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이용 및 관리에 관해서는 사회서비스권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종래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어느 정도 포섭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절차적·관리적 측면에서의 표준적인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분야의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해 절차적·관리적 측면의 기준이 되거나 동 법안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구상안(「사회서비스기본법」+「사회복지 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의 기본목적 · 사회서비스의 기본시책
「사회복지 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및 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절차법적 기준 마련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절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제 5 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사회서비스바우처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2년 2월 5일부터이다. 또한 그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동 법률과 하위법령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 1 절 주요 내용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법률의 관장 범위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로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고 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제5조).

③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제6조).

④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제16조).

⑤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다(제16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제28조).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제30조).

<표 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u>제 1 장 총 칙</u>	<u>제 4 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u>
제 1 조(목적)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 2 조(정의)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 3 조(적용범위 등)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31조(교육과 훈련)
제 6 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u>제 5 장 보칙</u>
제 7 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 8 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3조(비밀누설 금지)
<u>제 2 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u>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 9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u>제 6 장 벌 칩</u>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35조(벌칙)
제12조(이의신청)	제36조(벌칙)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37조(벌칙)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u>제 3 장 제공자 등록 등</u>	제40조(과태료)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7조(결격사유)	<u>부 칙</u>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 1 조(시행일)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 2 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한 경과조치)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 3 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 4 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5조(과징금처분)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1.8.4, 법률 제10998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① 사회서비스의 종류(안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시행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 등 업무방해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2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체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1 조(목적)

제 2 조(사회서비스의 종류)

제 3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제 4 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 5 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6 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제 7 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 8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 칙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1) 제공자 등록(안 제7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관리대장에 제공자를 등록하고 제공자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2) 제공자 준수사항(안 제9조)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 시설·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12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를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안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교육과 훈련(안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표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체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1 조(목적)	제 9 조(제공자의 준수사항 등)
제 2 조(비용 감면 기준)	제1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 3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제11조(제공자의 지위승계신고)
제 4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5 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 6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 7 조(제공자 등록 등) 제 8 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제1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 및 방법 등) 제15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제16조(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공통서식)
부 칙	

제 2 절 관계 법령 법체계 검토

1. 법령제명의 명확성 및 간결성

제명은 법률의 고유한 명칭으로, 제명을 붙이는 경우에는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다 더 명징하고 상징성 있는 표현이면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령 제명 시에는 주요규정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에는 「등」 또는 중간점(·)을 사용한다. 다만, 주요내용이 둘 정도에 그칠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명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¹²²⁾

여기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관리의 둘 정도이므로, 양자를 모두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성을 보면 총 제6장 44개조의 규정 중 부칙사항인 4개 조문을 제외하고

122) 국회법제실, 전게서, 245면; 법제처, 전게서, 587면.

제1장 총칙규정(총 8개 조문)에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머지 32개 조문은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명에 대한 국민적 이해성 제고 및 더 명징하고 상징성 있는 표현이면서도 법체계상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안에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섭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좀 더 간결한 법령 제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약칭사용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약칭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통상 제1조)에서는 법률의 제명 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당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을 할 수 있다.¹²³⁾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제공자”로 약칭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호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칭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한다. 그러므로 동조 제3호에서 약칭하기도 전에 “제공자”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제공자”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123) 국회법제실, 전게서, 1405-1406면; 법제처, 전게서, 652-653면.

현행 법률	검토안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 2 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사회서비스 제공자----- -----.</p> <p>4. (현행과 같음)</p>

3. 사회서비스 범위와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

입안과정 중에는 입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고 본래 의도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 하는 “실효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된 강제적 규범이 사회구성원의 준수 기대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상 일반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¹²⁴⁾

그런데 이러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 범위의 문제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범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서비스 범위에 대해 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124) 국회법제실, 전게서, 204면.

비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시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려면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협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를 복지 분야 및 의료보건분야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미루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사회서비스는 복지 분야 및 의료보건 분야 중 세부서비스로 파악하고 현행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제정(안)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①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②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③건강관리 서비스, ④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⑤사회적응 지원 및 상담·지도 서비스, ⑥문화·체험·여행 서비스, ⑦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⑧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를 분석하여 보면 사회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교육서비스 및 문화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이다. 다만 동 법률에서는 사회서비스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 중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사회적응 지원 및 상담·지도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간병서비스,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굳이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은 아니다.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에 관한 문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시행령제정안 제2조는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등이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현행 문화·체육·여행 바우처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용자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별개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정부”로 하고, 서비스 분야별로 대통령령에서 소관기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률	검토안
<p>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u>보건복지부장관</u>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u>보건복지부장관</u>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p>	<p>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u>정부는</u>----- ----- ----- ----- ----- ----- ----- ----- ----- -----</p> <p>② <u>정부는</u>----- ----- ----- ----- -----</p>

제 5 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현행 법률	검토안
<p>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p> <p>③ (현행과 같음)</p>

또한, 법 제3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위임할 사항은 없을 것이다.

현행 법률	검토안
<p>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p> <p>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지급 및</p>	<p>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법률	검토안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4. 벌칙규정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¹²⁵⁾

그런데 벌칙은 의무 내용에 따라 규정을 들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때문에 때로는 법률상 의무를 본칙에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훈시적 규정’이라고 한다. 다만 훈시적 규정의 경우 벌칙 조항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입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²⁶⁾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제재 처분을 할 뿐 벌칙규정이 없다. 그런데 제19조제4항의 위반은 이 법의 제1조에서 제시한 사회적

125) 국회법제실, 전게서, 1050면.

126) 법제처, 전게서, 455면.

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혼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	검토안
<p>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p>제36조(벌칙)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제19조제4항 및 제6항----- ----- 3. (현행과 같음)

또한, 법 제21조제3항에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5조제3항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금을 징수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 될 것이고, 군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필요는 없다. 즉 징수절차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므로 국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법률	검토안
<p>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u>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지방세 체납 처분</u>----- -----.</p>
<p>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p>	<p>제25조(과징금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현행 법률	검토안
<p>납부하지 아니하면 <u>국세 체납처분</u> <u>또는 지방세 체납처분</u>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u>지방세 체납</u> <u>처분</u>----- -----.</p>

5. 중복규정

법률은 다른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상호 모순·저촉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조직 또는 기능의 중복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²⁷⁾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의 사업자 등록정보 고지와 제29조의 사업자에 관한 정보공개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법 제16조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9조에서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공개 사항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것으로서 법 제16조제4항의 내용은 법 제29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 제16조제4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여 사무실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7) 국회법제실, 전거서, 89면.

현행 법률	검토안
<p>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u></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증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법률	검토안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 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p>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란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 전체 아니면 법률 중 일정한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범위의 대상을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한다.¹²⁸⁾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총칙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그 법률의 총칙규정에 두되, 총칙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둔다.¹²⁹⁾

다만, 입법례 중에는 하나의 조문에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규정하거나(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조문 제목은 “적용범위”로 하면서 실제 내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3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¹³⁰⁾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범위라는 규정의 제목아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8) 국회법제실, 전계서, 419면.

129) 법제처, 전계서, 75-76면.

130) 법제처, 전계서, 80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¹⁾ 이는 적용범위라기 보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입법체계상 규정의 제목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수정하고, 조문의 위치도 제1장 총칙규정의 마지막 부분인 제8조에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법률	검토안
<p>제 1 조(목적) (생략)</p> <p>제 2 조(정의) (생략)</p> <p><u>제 3 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생략)</u></p> <p><u>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생략)</u></p> <p><u>제 6 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생략)</u></p> <p><u>제 7 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생략)</u></p> <p><u>제 8 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생략)</u></p>	<p>제 1 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p> <p><u>제 8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u></p> <p><u>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현행과 같음)</u></p> <p><u>제 4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현행과 같음)</u></p> <p><u>제 5 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현행과 같음)</u></p> <p><u>제 6 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현행과 같음)</u></p> <p><u>제 7 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현행과 같음)</u></p>

131) 적용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의 표현은 적용범위의 의의와 배치된다[국회법제실, 전거서, 431면].

7.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해당 법률에서 국가의 정책 및 시책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말고 의무규정, 공고규정 및 실시규정을 함께 두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집행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범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즉 주요방향, 시책(정책)내용, 활동지침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¹³²⁾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는 규정 제목 아래에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안) 제3조에서는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시행계획(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나. 사업의 대상자, 다. 사회서비스 이용금액, 3.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4.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서비스 제공의 추진방향,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 발급기준, 발급시기, 발급수량 등(법 제9조제1항 참조),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감면기준(법 제6조제1항 참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용권의 사용방법,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2) 국회법제실, 전게서, 438면.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p>제 3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p> <p>2. 세부사업의 시행계획</p> <p> 가. 사업의 종류 및 내용</p> <p> 나. 사업의 대상자</p> <p> 다. 사회서비스 이용금액</p> <p>3. 세부사업별 소요예산</p> <p>4.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p>	<p>제 3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 발급기준, 발급 시기, 발급수량 등</p> <p>3.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감면기준</p> <p>4.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p> <p>5. 이용권의 사용방법</p> <p>6.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p> <p>7. 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p> <p>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안)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성이 깊은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제 3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제 3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p><u>제 4 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u> <u>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제 4 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생략)	제 5 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8. 용어의 정확성

법령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법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나타내는 내용이 법령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¹³³⁾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별표1제1호라목 중 “전 사업 연도”는 “전년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133) 법제처, 전계서, 34면.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마다 다르며, 심지어는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사업연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제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하 목록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p>[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 다. (생략)</p> <p>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를 한 제공자의 <u>전 사업 연도</u> 사회서비스 이용권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p> <p>마. 총 수입금액은 해당 제공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u>전 사업 연도</u>의 1년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이용내역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총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p> <p>바. (생략)</p>	<p>[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전년도</u> ----- ----- -----.</p> <p>마. ----- -----<u>전</u> <u>년도</u>----- ----- ----- ----- ----- ----- ----- ----- ----- ----- -----.</p> <p>바. (현행과 같음)</p>

9. 출입 및 검사 절차의 명확성

출입검사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행하여지거나 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상대방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또한, 출입검사나 조사를 받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하거나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사항은 출입검사의 근거, 출입검사의 사전통지, 출입검사자의 증표제시의무 등에 관한 것이다.¹³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부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 및 검사 절차에 대한 규정 보다는 운영을 묘를 살리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 보다는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권리의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¹³⁵⁾에서 보고 검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동 시행령(안) 제6조에서

134) 법제처, 전계서, 432-435면.

135)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그 시기 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p>제 6 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대상·목적 및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p>	<p>제 6 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은 이용권제도 운영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당해 업소에 비치한 별지 제00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p>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현행과 같음)</p>

10. 이용자의 비용 부담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용자의 부담분이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용자의 부담 부분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복지측면에 중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2조 제2호에서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1.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절차 등

(1)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1)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3조에서는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의 정보접근에 대해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입법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들 수 있다.¹³⁶⁾ 즉,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136) 제7조(복지 급여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때 신청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3조 제2항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바로 다음 시행규칙(안) 제4조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즉, 시행규칙(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안)의 별지 서식을 보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와 관련한 서식만 존재하고,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이용자와 관련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신청서, 동 재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에 대한 모형이 필요하다.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제 3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신 설)	제 3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① <u>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에 관한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u>

를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① <u>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u>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u>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u>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u> ----- ----- ----- ----- ----- ----- ----- ----- ----- ----- ----- ----- ----- -----</p> <p>(삭 제)</p>

(2)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

하여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신청권의 실질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시행규칙(안)제5조(이의신청의 방법 등)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음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u>제 5 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u>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주민등록증</u> <u>나. 자동차운전면허증</u> <u>다. 장애인등록증</u> <u>라. 여권</u> <u>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u> <u>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2호 각 목의 어느</u>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p>	<p><u>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3) 사회서비스이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1)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할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① 이용자의 이름,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③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④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6조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밖에 사용지역 또는 제공자의 범위 등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지역 또는 제공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범위의 고려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제16조제2항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의 등록 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에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7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다.

시행규칙(안) 제 7 조(제공자 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관리대장에 제공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공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공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급 상황, 제공자의 적정 시장 규모, 사회서비스 품질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적정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시행규칙(안) 제7조 제2항 및 별표1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 고지 방법(제16조제4항 관련)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등록여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 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 등 등록사항에 대한 고지내용은 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록이란 행정기관이나 협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격자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는 공증에 해당한다. 이러한 등록에 관한 규정은 등록신청,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 등록의 제 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들을 동반한다.¹³⁷⁾ 이러한 등록은 일면 자유경쟁의 제한적 요소와 함께 행정작용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2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중성으로 인해 등록 관련 규정은 상세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에서는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법률 시행령(안) 제7조에서 제공자 등록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7조제1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항에는 필요서류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려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참조할 수 있다.

137) 국회법제실, 전게서, 703면.

제 5 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제 7 조(제공자 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u>따른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⑦. (생략)</p>	<p>제 7 조(제공자 등록 등) ① ----- ----- -----<u>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u>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u></p> <p><u>2. 기술능력 보유현황</u></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또한, 시행규칙(안)에는 동 법률 제16조제7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변경등록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참조하여 조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u>(신설)</u></p>	<p><u>제00조(제공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p>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② <u>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제공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공기관의 명칭 변경</u> 2. <u>서비스 종별의 변경</u> 3. <u>대표자의 변경</u> 4. <u>사무실 소재지의 변경</u> <p>③ <u>제1항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00호서식(제공자 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4)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여야 할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①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연령, 성별, 경력을 포함한다), ②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③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④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 제19조제1항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제공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입법적 여지를 두었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에 대한 공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제 9 조(제공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연령, 성별, 경력을 포함한다)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4.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p>(신 설)</p> <p>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③ (생략)</p>	<p>제 9 조(제공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연령, 성별, 경력을 포함한다)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4.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p>5.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p> <p>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5)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기타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1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서는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약 받은 기관에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약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공비용을 예약하는 경우 예약 받는 기관은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과 다른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공자, 금융기관, 예약 받은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및 제30조(급여비용의 예약 등)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제재 규정시의 일반적 유의사항으로는 허가의 취소, 등록의 취소 등 행정제재는 사업자를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가벼운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12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가중사유가 없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별표 2]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별표 2]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3. 처분의 가중·감경 <u>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별표2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1.일반기준 및 2.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u></p> <p>1) 가중사유 <u>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u> <u>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2) 감경사유 <u>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u> <u>라) 위반행위자가 사회서비스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u></p>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u>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u> <u>바) 사회서비스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7)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동 법률 규칙안 제15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제품의 품질관리와는 달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또한 우수한 품질로 수행되도록 상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서비스 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공자가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교육훈련을 충실히 받고 있는지, 그 밖에 제공자가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고객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지 등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 절 알기 쉬운 법령 체계 검토

1. 정비기준

(1) 쉬운 법령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즉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2) 뚜렷한 법령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즉, 법령문은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령문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반듯한 법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원칙적으로 어문 규정에 따라야 하고, 법령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문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기준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어문 규정 자체의 예외적인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4)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즉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검토안

(1) 명확한 문장

법령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 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도 있다.¹³⁸⁾

법문의 일부 내용이나 성분이 생략되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현행 법률	검토안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u>장려되는</u>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을 <u>장려할 수 있도록</u> ----- ----- -----

138)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 법제처, 2009, 116면.

제 5 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현행 법률	검토안
<p>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u>없었음</u>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 -----없었던 <u>정당한 사유를</u>----- -----.</p>
<p>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u>법인의 경우로서</u>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7조(결격사유) ----- ----- ----- <u>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u> ----- ----- -----.</p>

현행 시행규칙(안)	검토안
<p>제14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u>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u> <u>이용자에게 공개한다.</u></p>	<p>제14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u>인터넷 홈페이지 등에</u> <u>공고하여야 한다.</u></p>

(2) 간결한 문장

장황하거나 간결하지 않은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진 간결한 말로 바꿈으로써 의미 전달을 쉽게 한다. 최근에는 간결한 문장을 위해 법

조문에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률	검토안
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5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 ----- ----- ----- ----- ----- 수립·시행하고, -----.

또한, 법령문에 사용되고 있는 본딴말 중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은 일상적인 언어 습관과 사용법에 맞게 준말로 고친다.¹³⁹⁾

현행 법률	검토안
제 6 조(이용자의 비용부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대하여</u> 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제 6 조(이용자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대해서</u> 는----- -----. 1. 이하 생략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는 해당 법령문에서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139) 법제처, 전게서(알기쉬운 법령 기준), 84면.

현행 법률	검토안
<p>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이의신청) ① ----- ----- 사람은----- ----- ----- ----- ----- ----- -----.</p>
<p>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 사람에게 ----- ----- -----.</p>

(4) 그 밖의 정비대상

1) 가운뎃점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2조제6호 규정의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문화서비스, 체육서비스, 여행서비스가 대등한 관계인지 아니면 밀접한 관계인지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체험서비스 내에 문화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호로 구분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안) 제2조제6호 규정의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활용구 또는 보조용구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용구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체계상에서 보면 재활용구 및 재활보조용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구·재활보조용구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제 2 조(사회서비스의 종류) 1.~5. 생략 6.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7.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제 2 조(사회서비스의 종류) 1.~5. 생략 6. 문화서비스 7. 체험서비스 8. 여행 서비스 9. 재활·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2) ‘의한’ → ‘따른’

‘~에 의한/의하여/의한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꾼다. 그리고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으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다만, ‘의하여’를 ‘~으로’로 바꾸었을 때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¹⁴⁰⁾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제 4 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2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 ----- 따른 ----- ----- -----.

140) 법제처, 전계서(알기쉬운 법령기준), 86-87면.

3) 조문의 표기방법

일반적으로 가지조문의 표기방식은 ‘00조의0’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6조3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안)	검토안
<p>제 7 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p>	<p>제 7 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제6조의3- -----.</p>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강현철, 국방·군사시설 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국회사무처, 2008.
- 남찬섭,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상황과 복지 제26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8.
- 박광수,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도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박영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 법제처, 2011자치입법 기본과정, 법제처, 2011.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 법제처, 2009.
- 배종득 외3인, 전자바우처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 보건복지가족부/서울여자대학교,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1.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9.
- 이봉주 외,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등록기준 개발,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2010.

참 고 문 헌

- 정광호, 바우처 분석(이론과 현실), 법문사, 2010.
- 정광호, 바우처 연구, 법문사, 2008.
- 김성욱,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전달방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2011.8.8.
- 최성은/최석준, 바우처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 인,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 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4호, 2010.2.
- 김 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제도의 시장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2010.6.
- 김인숙, “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11.
-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제도도입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 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2007.6.
-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바우처사업의 발전방안”, 한국거버넌스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4.3.
- 김윤수, “전자바우처제도 및 운용사업의 현황”, 제1차 여성인재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5.26.
- 김은정,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과 정책적 쟁점”, 사회과학연구 제25집 1호,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9.3.
- 김종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복지동향 통권101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7.3.

-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제13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5.
- Ronald J. Daniels, Michael J. Trebilcock 공저/장승옥, 지은구, 김은정 공역, 복지국가와 바우처, 학지사, 2009.
- 박영길, “영국의 바우처제도”,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3.3.
- 박정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리뷰 제12집,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12.
-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31집,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12.
- 신창환/강상경, “한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공급구조와 바우처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2010.5.
- 양난주,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Vol. 61, No. 3, 2009.8
- 엄태호/조근식/김공록,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6.
- 윤찬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의와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 5개기관 공동개최 대토론회, 2011.2.22.
- 이창근/손민수/김의준, “바우처제도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3.

참 고 문 헌

- 임성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경과와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 5개기관 공동개최 대토론회, 2011.2.22.
-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3.
- 정영훈,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제도”,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3.3.
- 최성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바우처제도, 현황과 전망”, 2008년 2차 서울복지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08.11.19.
- 최승필, “독일의 Gutschein(Voucher) 제도에 대한 고찰”,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3.3.
- 최옥채, “바우처사업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상황과 복지 제25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2.
- 홍금자, “보육지원시스템의 바우처제도 도입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9.6.

II. 국외문헌

- 掘勝洋, 現代社会保障・社会福祉の基本問題, ミネルヴァ書房, 1997.
- 内閣府政策統括官, バウチャーについて, 内閣府政策統括官, 2000.
- 内閣府政策統括官, バウチャーについてーその概念と諸外国の経験, 内閣府政策統括官, 2001.
- 浜口桂一郎, 労働法政策, ミネルヴァ書房, 2004.
- 河野正輝, 社会福祉法の新展開, 有斐閣, 2006.

行政刷新会議 公共サービス改革分科会, 公共サービス改革プログラム, 2011.4.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平成22年度介護保険事務調査の集計結果について, Vol.157,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2010.8.12.

駒村康平, “準市場メカニズムと新しい保育サービス制度の構築”, 季刊社会保障研究 No.180,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8. Summer.

西崎文平, “バウチャーによる公共サービス改革の可能性－制度改革の有力な選択肢の一つに－”, 月刊官界 27(9), 2001.9.

松井由佳/瓜生淑子,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乳幼児保育制度－幼保一元化のもとでの現状とそこからの示唆－”, 奈良教育大学紀要第59巻 第1号(人文・社会) 2010, 61面.

坂田仰, “日本教育におけるバウチャー論の軌跡と行方”, ジュリストNo. 1337, 有斐閣, 2007.7.

後房雄, “福祉國家の再編成と新自由主義 -ワークフェアと準市場”, 年報行政研究 No.44, ぎょうせい, 2009.5.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平成22年度介護保険事務調査の集計結果について, Vol.157, 厚生労働省老健局介護保険計画課, 2010.8.12.

I.C. Elliott, P. Valkama and S.J. Bailey, “Public Service Vouchers in the UK and Finland”, in S.J. Bailey, P. Valkama and AV Antri-roiko(eds.), Innovations in Financing Public Services: Country Case Studies (Palgrave, 2010)

Steuerle, C. E., Ooms, V.D., Peterson, G., Reischamer, R. D.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Roland Klinger/Peter-Christian Kunkel/Karen Peters, Sozialhilfrecht, 2. Aufl., Nomos, 2007.

Ⅲ.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검토보고, 2010.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0.2.

보건복지가족부,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성과와 과제, 2009.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검토보고, 2010.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0.2.

엄태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효율성 분석, ppt자료.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5/3262/regulation/3/made>.

http://world.moleg.go.kr/content.do?nt_cd=NT003&content_id=17502.

[http://en.wikipedia.org/wiki/Health_and_social_services_access_card_\(Australia\)](http://en.wikipedia.org/wiki/Health_and_social_services_access_card_(Australia))

http://www.cultureline.kr/webgear/board_pds/6879/D001446.PDF.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ayments/index.ht>.

<http://www.deewr.gov.au/Skills/Pages/default.aspx>.

- http://www.psychology.org.au/medicare/bushfire_program/.
- <http://www.deewr.gov.au/HigherEducation/Pages/Overview.aspx>.
-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school/lifeatschool/schoolstartfaq.htm>.
- <http://www.health.gov.au/hear>.
- [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orderBy=dateFirst;page=1;query=Human%20Service%20\(Enhanced%20Service%20Delivery\)%20Bill%202007%20SearchCategory_Phase%3A%22bills%20and%20legislation%22;rec=1;resCount=Default](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orderBy=dateFirst;page=1;query=Human%20Service%20(Enhanced%20Service%20Delivery)%20Bill%202007%20SearchCategory_Phase%3A%22bills%20and%20legislation%22;rec=1;resCount=Default).
- <http://www.dest.gov.au/>
- <http://www.deewr.gov.au/Skills/Overview/Pages/Overview.aspx>.
- <http://www.cao.go.jp/sasshin/koukyo-service/meeting/110112/pdf/1.pdf#search=‘サ?ドセクタ?から見た公共サ?ビス改革の課題’>.
- <http://www.geocities.co.jp/NatureLand/9205/a20-column/2010-keizai/2ii.html>.
- <http://www.jaemo.net/pdf/2001010dounyurei.pdf#search=‘?育訓練給付パウチャ?’>.
- <http://www.kantei.go.jp/jp/singi/kinkyukoyou/suisinteam/SNdai2/siryoul.pdf>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61123000765&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100100000&dataid=200611231447000108>.
- <http://www.socialservice.or.kr/ptl.JspEditor.doj>.
-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ayments/index.htm>.
- <http://www.vitaminmd.co.kr/dic/disease/view.md?diseaseid=00DsT&seqno=181>.

참 고 문 헌

<http://www.cao.go.jp/sasshin/koukyo-service/meeting/110112/pdf/1.pdf#search='サ?ドセクタ?から見た公共サ?ビス改革の課題'>.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05/3262/regulation/3/made>.

http://world.moleg.go.kr/content.do?nt_cd=NT003&content_id=17502.

<http://www.socialservice.or.kr/ptl.JspEditor.doj>.

<http://www.khwis.or.kr/usr/boardRead.do?sd=PS&ms=75&pageIndex=1&bulletinSeq=2&listSeq=2152>.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mctNews/mctNewsView.jsp?pSeq=1648>.

<http://local.segye.com/articles/view.asp?aid=20110822001247&cid=610503000000>.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45호(2011.8.24.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1 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3. 건강 관리 서비스
4.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5. 사회적응 지원 및 상담·지도 서비스
6.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7.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제 3 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나. 사업의 대상자

다. 사회서비스 이용금액

3.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4.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 4 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 5 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대상·목적 및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참 고 자 료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 8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전 사업년도 사회 서비스 이용권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총 수입금액은 해당 제공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 사업 년도의 1년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이용내역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총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원)
1	10 미만	30,000
2	10 이상 ~ 30 미만	35,000
3	30 이상 ~ 50 미만	42,000
4	50 이상 ~ 70 미만	50,000
5	70 이상 ~ 100 미만	60,0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5,000

참 고 자 료

등급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원)
10	500 이상 ~ 600 미만	130,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45,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60,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175,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180,000
15	1,000 이상	200,00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45호(2011.8.24.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비용 감면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 3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 4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손상된 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5 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제 6 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제 7 조(제공자 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관리대장에 제공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공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공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한다.

제 8 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하는 자는 휴업이

나 폐업 2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제공자가 없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의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9 조(제공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연령, 성별, 경력을 포함한다)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4.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1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기관에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공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공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전 제공자가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가.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실사유서(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공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공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연령, 성별, 경력을 포함한다)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4.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공자 등은 해당 정보내용 중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② 법 제3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참 고 자 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공통서식)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제4조에 따른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서식 등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지 제1호에서 제4호의 서식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제곱미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이란 돌봄여행, 체험학습과 같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단으로 활동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시설은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자격기준

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외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4)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서비스 제공인력

- 1)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참 고 자 료

- 2) 산모신생아도우미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4)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 제공기관에 등록된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추천으로 이웃 주민을 제공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서비스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는 불인정). 이 경우 이웃 주민은 해당지역 내 제공기관 중 1개소에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이웃주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교육 면제(제공기관 자체교육으로 대체)

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 가목 각항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관리책임자를 제공인력 50명당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4. 인력기준

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제공인력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3명 이상)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사업 :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이상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별 제공인력 각 3명 이상

라. 제공인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마.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5. 하나의 제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인력을 공

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특례
 - 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자가 될 수 없다.
 -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은 1년을 단위로 신설·유지 혹은 폐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면 제공자의 등록은 효력을 유지하나, 동 사업이 폐지되면 제공자의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	-	-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4.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3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	-	-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6.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 정지 60일	등록 취소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 정지 10일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 정지 20일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 정지 30일			
7.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 취소	-	-	-

비고 1) 부당청구금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대상기간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총 수입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부당청구금액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영업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변경) 신청서			
① 서비스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명: _____)		
② 기 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 □ □ □		
	전화 번호	팩스번호	Email @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④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시설 및 인력현황 3. 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위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를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관리대장						
제공자 정보	기관명					
	서비스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폐업일자		폐업사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소					
건물	영업장면적					
시설 설비	사무실		통신설비		기타 필요비품	
자격	대표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 번호 :
2. 제공기관명 :
3. 서비스 종별 : (세부사업명:)
4. 대표자 성명 :
5. 소재지 :
6. 사업자등록번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제공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 폐업 [] 휴업	신고서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③ 폐업·휴업기간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제공자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작성 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제공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일자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승계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승계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제공기관	명칭	변경전	변경후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승계일		승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영업양도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실사유서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감증명서 (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이용권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